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093-01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ignity and justice for all of us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인권은 인류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북한인권 토론회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접근방법 모색

일시 | 2008. 9. 26(금)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공동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 동국대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EM024970



국가인권위원회

개 회 사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박순성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논의들은 그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에 기반을 둔 논의라기보다는 주로 당위성과 정치적 입장에 의해 주도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인권 문제는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특수성으로 인해 어떤 접근방식이든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국내외 여론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 인권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국내적인 이념 지형이나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방식에 따라 접근시각에서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진전 없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하여 직접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운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방법의 수립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하는 문제에서부터 수집된 사례에 대한 사회구조적 이해와 해석,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북한인권개선의 열쇠를 푸는 중요 고리와 단계별 과제의 설정, 중장기적인 정책 프로그램과의 연동 문제 등이 모색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하여 이미 2004년 ‘탈북자 증언을 통한 북한인권 실태조사’, 2005년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2007년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올해에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조사'를 용역발주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회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였는가 하면,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탈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북한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참여 통해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접근방법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명실상부한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여 주시고, 생산적인 논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실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9. 26.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유 남 영**

목 차

발제 1. 기존 북한 인권실태 조사방법의 경향과 문제점 1

김병로 (서울대 통일연구소 연구교수)

발제 2. 북한의 정치적 지배구조와 자유권 조사방법 17

김종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연구교수)

발제 3. 북한의 경제적 분배 구조와 사회권 조사 방법 51

차문석 (통일교육원)

발제 4.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연구방법론에 대한 모색 75

- 탈북 여성의 생애체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희영 (대구대 사회학)



기존 북한 인권실태 조사방법의 경향과 문제점

김 병 로

(서울대 통일연구소 연구교수)

1

발 제

기존 북한 인권실태 조사방법의 경향과 문제점

김 병 로 (서울대 통일연구소 연구교수)

1. 지난 20년의 개관

북한인권실태가 국제사회에 문제로 부상한 것은 1989년 무렵이다. 1988년 12월 아시아 위치(현 휴먼라이트위치/아시아)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북한의 인권’을 발간했고 1989년 국제사면위원회(AI)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배경설명’을 발표함으로써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이처럼 국제민간기관에 의해 제기된 북한 인권문제는 1997.8월과 1998년 두 차례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결의문으로 채택되었다. 2003년부터는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으로 다루어지게 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북한인권문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유엔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그 동안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자료부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부각되지 못했으며 북한당국의 완강한 부인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북한왕래가 가능해지면서 자료접근이 용이해졌으며, 특히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방북한 사람들과 중국으로 건너온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의 인권현실이 공개되었다. 이들을 통해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정보가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지난 20년간 북한인권문제가 다루어진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 1) 1988~1994년, 서울올림픽과 탈사회주의 변화로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 형성
- 2) 1995~2001년, 북한의 식량난으로 대량탈북 발생으로 국제적 관심 고조, 탈북자를 통한 정보의 축적으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3) 2002~현재, 북미간 정치적 대립 이후 적극적 망명정책 시도

첫 번째 라운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와 대조적으로 북한의 폐쇄성과 인권억압의 실태가 국제사회에 비판의 대상으로 떠오른 시기다. 특히 1989년 이후 남북교류협력법률에 의한 방북이 가능해졌고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발생한 동유럽 북한유학생 및 러시아 별목공의 탈북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두 번째 라운드는 1995년 식량난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이 시작되고 대량 탈북이 발생하면서 북한인권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진 시기다. 북한의 NPT 탈퇴선언(93년)과 김일성의 사망(94년)으로 북한으로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식량난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의 대북활동이 시작됨으로써 국제기구 활동가들을 통해 북한인권실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산발적인 증언으로 경험자료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외국인 활동가와 대량의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97년과 98년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결의안이 나온 것도 탈북자들의 증언과 인터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인권유린은 부인할 수 없는 확증으로 나타났고 수용소 경험자와 정보를 가진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침해 실태의 윤곽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외 인권 NGO의 활동이 활기를 띠었다.

세 번째 라운드는 2002년 10월 북한과 미국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된 이후 북한인권문제가 심각한 정치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의 분위기 속에서 2001년에는 북한-유럽연합(EU) 간 ‘인권대화’가 시작되는 등의 변화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9월 북한인권위원회를 조직하고 대북 인권압박을 가하였고 2002년 10월 핵문제로 인한 북미대립이 격화됨으로써 북한-EU와의 인권대화마저 중단되었다. 2003년부터 북한인권문제는 유엔인권위원회 차원으로 격상되어 다루어졌다. 2004년에는 유엔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고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04.10)하며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2006년 6월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이어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들이 탈북자에 대한 망명을 받아들이면서 정치외교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2. 국제기구 · 단체의 북한인권 자료조사 실태

(1) 유엔인권위원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1994년 EU 대표 및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이, 1995년에는 EU대표 및 미국대표, 2개의 NGO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개선조치를 촉구했다.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차별방지소위는 1997년 8월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와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¹⁾ 인권소위원회는 1998년에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03년부터는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는 위원들의 개별적 활동을 통해 인권실태 자료를 입수해 왔으며, 인권이사회는 2004년 북한인권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를 도입하여 비릿 문타폰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였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각국 정부로부터 자료협조를 받고 개별적으로 탈북자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인권침해 정보·자료를 확보한다. 비릿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9년 6월까지 임기가 연장되어 활동하고 있다.

(2) 미국무부 연례보고서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

미 국무부는 매년 초 「각국 인권실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취급한다. 이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북한정권은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인권마저 허용치 않고 탄압통치를 계속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내에 12개의 정치범수용소에 약 15만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수용되어 강제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받고 있고 평양거주에 대한 허가는 엄격히 통제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 인권소위 전문위원 가운데 미국의 와이즈브로트, 프랑스의 주아이네, 벨기에의 보쉬, 그리스의 다엑스 등 7명의 전문위원이 공동발의하여 13:9(기권 3)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결의안은 국가간 및 국내적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에 관한 유엔결의안(결의안 1997/22)을 상기하면서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인권유린국가 리스트(결의안 1997/33)에 북한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환시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이 관리소 내에 대규모 인원을 구금함으로써 심대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일치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에 대해 해외로의 이동의 자유 보장, 인권이사회 정기보고서 제출 등 4개항의 대북결의문을 채택하였다.

2001년 9월 북한인권위원회를 창립하고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2005년 8월에는 제이 레프코위츠를 북한인권특사로 임명했다. 2006년 5월에는 6명의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여 미국입국을 허용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탈북자 80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국무부의 인권담당팀과 레프코위츠,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아시아담당관의 활동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다.

(3) 유럽연합(EU)

1998년부터 EU는 북한과 정부 고위 수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정치 회담을 갖은 바 있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1년 5월 2-4일간 Persson EU의회의원, Patten 대외담당 집행위원, Solana 대외안보관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여 양국정부의 수뇌와 회담을 나누었다. 양국간 첫 관련 회담은 2001년 6월 13일 개최된 바 있다. 경제원조와 관련하여 EU는 1995년에 처음으로 개입한 이래 식량원조, 농업 복구 지원, 비 식량 인도주의적 지원, KEDO 참여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북한을 지원한 원조액은 총 280 백만 유로에 달한다. 정치인들의 외교적 교류와 인도주의 대북지원 기관들의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인권자료를 생산한다. CSW의 엘리자베스 바사와 같은 인권운동가들이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와 기존 탈북자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인권자료가 널리 활용된다.

(4)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1983년부터 연례보고서에 북한인권실태를 수록하고 있다. 연례보고서 외에 북한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해 왔다. 1989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배경설명」을 출판함으로써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평가를 전개하였다. 1993년 10월에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단독보고서를 통해 4~5명의 인사와 북송교포들의 인권상황을 우려한다는 내용을 북한당국에 보내 이들의 처우실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²⁾ AI는 1995년 4월말에 개최된 ‘평양축전’ 기간 동안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인권상황

2) AI는 1994년 7월 30일 승호마을에 수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49명의 정치범들의 명단과 인권실태를 폭로하고 이들의 형편과 친척들의 행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조호평과 시바타 고조, 신숙자 등의 행적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의문을 제기한 신숙자와 그 딸들은 신숙자의 남

에 대해 발표하였다.³⁾

이러한 활동에서 보듯 AI는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름을 포함한 신원 정보를 입수하여 근거로 제시한다. 1996.9월 탈북자에 대한 특별보고서, 1997.1월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도 인권침해 당사자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북한당국에 제시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북한당국에 협조를 요청하여 북한을 방문하고 피해당사자에 대한 면담도 실시했다. 북한의 공식적인 설명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북한당국의 의문사항에 대한 해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5) 유엔라이트워치(HRW)의 보고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1988년 12월 아시아워치(Asia Watch; 현재는 Human Rights Watch/Asia)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가 공동으로 발간한 최초의 체계적인 북한인권보고서에 의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아시아워치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정부의 조직적인 인권탄압과 자유억압 및 통제·감시 실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하였다.⁴⁾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에 관한 정보부재와 북한에서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북송교포들의 신체적, 정신적 인권유린 실상과 공개처형 및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인권억압 실태에 대해서도 폭로하였다.

편이 해외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이후인 1987년에 구금되었다고 알려졌는데, 북한당국은 이들이 평양에서 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3) AI, "Amnesty International Delegation Visits North Korea, Discusses Legal Reforms and Prisoner Cases", (1995.5.11).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현재 3개의 강제수용소에 반국가행위자 240명을 포함, 약 8백~1천여 명의 양심수를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은 또 1995년 12월, 1960년대 초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북송교포 중 일본국적의 시바타 고조(한국명 김호남)씨가 간첩죄로 26년 동안 수감되어 있다가 지난 1990년초 석방되었으나 1990년 3월 교통사고로 친척들과 함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I는 시바타 고조씨가 1964년 간첩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반국가음모 선동죄'로 6년간의 추가형을 선고받았으나, 시바타 고조씨는 6년의 추가형 선고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공식적인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북한당국은 또 조호평이 지난 1967년 간첩죄로 투옥되어 복역하던 중 1974년 10월 탈옥한 후 군함정을 납치해 해외탈출을 시도하다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함정이 폭파되면서 부인과 자녀 3명과 함께 사망했다고 답변하였다.

4)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송철복 외 역, 「북한의 인권」 (서울: 고려원, 1990).

2006년 5월에 발표한 “A Matter of Survival: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Control of Food and the Risk of Hunger”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식량지원 활동을 금지시키고 식량 배급제의 부활과 사적 곡물거래 금지 등 최근 취한 정책들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또다시 기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약 6개월 동안 한국입국 탈북자, 북한 식량 관련 전문가, 경제전문가, 남한 정부 관계자, 유엔 및 구호단체 관계자, 북한 관련 최근 정보를 가진 조선족 등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6) 프리덤하우스 연례보고서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2008 세계의 자유’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시민적 자유, 정치적 권리 모두 최하위 등급인 7등급으로 분류되었다. 2005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제 1회 북한인권대회를 개최했다. 각국 인권순위를 매기는 과정에는 33명의 분석관과 16명의 자문위원이 관여하며, 각국 관련 언론보도, 학술자료, NGO 보고서, 개별접촉, 현장방문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등급을 평가한다. 각국의 연례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는 10명으로 구성된 본부의 핵심조사팀과 24명의 외부 자문관이 참여한다.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자료를 담당하는 1인의 담당관을 두고 있다.

(7) 해리티지재단 보고서

해리티지재단은 1992년 7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권부재 실상을 심포지움 보고서 「북한의 인권」에 담아 출판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인권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들의 개입을 통해 1990년대 들어 점차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인권기관 및 관련국은 물론 AI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휴먼라이트워치, 프리덤하우스 등의 인권기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북한인권 관련 전문 담당관을 배치하거나 전문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체제의 경제사회적 개방화가 불가피한 북한의 사정을 감안하면 북한인권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각한 국제적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3. 국내 인권기관의 자료 및 조사방법 검토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실태에 관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자료원은 통일연구원이 발행하는 ‘북한인권백서’일 것이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북한인권백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국내의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북한인권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1996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다. 매년 발간되는 ‘북한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에서 주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인권침해 자료를 확보한다. 증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가급적 본인의 경험이나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들의 침해사례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1996년 처음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할 당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접근 가능한 모든 탈북자들을 인터뷰했다. 정치범수용소의 수감경험자를 포함하여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정치범 이송을 맡았던 운전병, 정치범수용소 지역 안에 허가를 받고 다닐 수 있었던 사냥꾼 등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인권백서를 작성했다. 이러한 증언을 기초로 정치범수용소의 구조와 운영 현황, 통폐합의 역사, 정치범의 규모 등의 기본골격을 형성했다. 그 이전까지 정치범수용소의 규모를 12~14개로 추정했으나, 통일연구원은 관련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치범수용소가 5개로 통폐합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 후 독일의 잘즈기터의 인권기록보존소를 벤치마킹하여 개인별 인권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준비작업과 자료수집을 했으나 체계화하지 못했다. 통일 이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근거 문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모든 사건들을 전산화할 계획이었으나 인권침해자료 DB구축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신 일반 탈북자들을 통해 얻는 인권침해 상황을 북한인권백서에 반영하는 정도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개인별 인권침해 사례를 모으고 통계수치화하는 기관이 북한인권정보센터다. 독일의 인권기록보존소를 역할모델로 삼아 탈북자 가운데 인권침해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원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DB화하고 있다. 또 자료의 질적 측면만 아니라 양적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통계처리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잘쓰기터에 관한 보고서, 북한의 종교자유 백서, 탈북자 경제활동 동향, 국군포로 등 각 주제별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인권통계백서’는 549명의 인권유린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 등 2975명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록하고 있고 3903건의 사건기록도 담고 있다. 2008년에는 북한인권백서로 출간하여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와 함께 중요한 자료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4. 북한인권실태 자료 및 조사방법에 대한 사례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자료는 주로 북한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집·조사된다. 탈북자의 증언이 가장 강력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증언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탈북자의 공개증언이 신변의 위협 등으로 또 다른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어 확고한 물증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공개처형 포스터라든가 김정일타도 벽보, 공개처형 동영상과 같은 물적 자료가 제시된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였다.

근래에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킨 몇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인권실태의 조사방법과 자료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검토해 본다.

(1) 생체실험에 대한 증언

2002년 3월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화학기술자인 한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이 50대 탈북자는 1979년 자신이 평성 소재 북한의 군사감옥 연구실에서 정치범이 된 군인 2명을 상대로 독가스 시험을 하는 데 직접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영국의 BBC방송은 2004년 2월 이 내용을 ‘Access to Evil’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방영하여 전세계가 경악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부녀자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화학무기 생체실험을 실시했으며 실험 대상자들은 실험 현장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증언자로 나온 사람은 가스를 주입하여 생체실험을 했던 장소를 그림으로 그려가며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 증언자와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

하는 의견과 비판이 뒤따랐다. 뒤이어 정치범수용소인 국가보위부 22호 관리소에 수용돼 있던 최씨를 생체실험을 위해 함흥에 위치한 2.8 비날론 연합기업소에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긴 생체실험증명이관서가 사진으로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문서에 쓰인 내용과 도장의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2) 탈북자 강제송환 후 취조과정에서 구타장면

탈북자 강제송환 과정에서 취조시 구타장면 동영상이 유포된 적이 있다. 이 동영상은 후에 2002~2003년 경에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고, 국가보위부원이 돈을 받고 촬영한 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에는 촬영일자가 2005년 8월 17일로 되어 있다.

(3) 김정일타도 벽보·동영상 사건

2004년 10월 경 함경북도 회령의 한 공장 건물 구석에 ‘김정일 타도’라는 반체제 내용을 담은 벽보와 동영상이 나돌았다. 동영상에는 자유청년동지회라는 반체제 단체의 성명도 발표되었다. 북한 내부와 연결된 전문브로커들이 북한 내부에서 찍은 영상이 장사가 된다고 하여 경쟁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서 찍은 영상과 중국에서 촬영한 것을 조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4) 공개처형 장면 및 정치범수용소 촬영

2005년 9월 일본의 NTV가 회령에서 자행된 3명의 공개처형 동영상을 보도했다. 공개처형 장면도 함께 보도했는데, 일본에서 전문 브로커가 탈북자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처참한 장마당 장면을 보도하여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환기시킨바 있는데 이 보도는 큰 충격을 주었다. 이 공개처형 장면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간주된다.

2003년 10월 공개된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의 노동단련대 내부 모습도 관심을 끌었다. 수감자들이 상의를 벗은 채 목재를 운반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간주된다. 일본 후지TV가 2004년 2월 요덕수용소의 동영상을 공개하여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동영상에는 정치범들이 경비대

와 보위원들의 주택가를 돌며 인분을 퍼내고 있는 모습과 이들이 언 배추잎을 먹다가 경비병이 다가서자 황급히 감추는 모습이 담겨 있고, 주택가 주변에는 전기철조망이 늘어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 동영상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정치범 수용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촬영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또 다른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지만, 정치범수용소의 동영상을 확보한 것은 정보매체의 발달이 가져온 자료수집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5) 정치범수용소 인공위성 자료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정치범수용소 사진자료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밝힌 것은 없지만 기존 탈북자의 증언을 구체적인 지리적 위치와 사진을 통해 시각화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003년에 출간한 David Hawk의 ‘감춰진수용소’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인공위성 사진자료는 과거 정보기관에서만 활용했었으나, 상업용 위성이 발달함에 따라 일반 연구자에게도 상당 수준까지 공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력한 조사방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6) 탈북자 수기

탈북자의 수기는 북한인권실태 자료를 확보하는 주요한 자료원이다. 강철환·안혁의 ‘대왕의 제전’(95), 강철환의 ‘평양의 어항’(2003)과 같은 수용소의 수기를 통해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해 왔다.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난 신동혁의 증언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유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출간한 이 수기는 정치범수용소의 일상세계와 거기에 적응하여 살고 있는 수감자들의 심리를 잘 묘사하였다. 최근 ‘림진강’에 수록된 ‘제18호 관리소의 흑막’도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 관리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사람과 북한 내 관련자들의 경험과 증언을 바탕으로 18호 관리소의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5. 북한 인권실태 조사방법의 경향과 문제점

첫째, 여전히 탈북자 증언이 주요 자료원이 되고 있으나 자료의 원천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소수의 제한적인 탈북자 증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조사가 정치범수용소의 다양한 경험자로 확대되었고, 인공위성과 동영상 등 발달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입수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원천이 다원화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둘째, 정치범수용소의 경험이나 정보를 접한 탈북자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유린 실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탈북자가 탈북 및 강제송환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고 중국에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의 인권침해와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에서의 탈북자 인권실태 조사가 활발해졌다.

셋째, 북한인권실태 조사가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를 자제한 반면, 대립하는 기간에는 북한인권실태를 폭로하는 과정이 지속되었다. 그러다보니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실제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북한인권상황의 열악성을 폭로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때문에 유엔연합과 북한이 진행했던 인권대화라든가, 국제사면위원회가 북한당국의 협조로 북한을 방문하고 피해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의 실제적인 방법은 지속되지 못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에서의 결의안 채택과 같은 외교적, 도덕적 압박의 방법에 주로 의존하게 되었다.

넷째, 북한인권정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정치범수용소의 전체적인 숫자와 정치범의 규모, 각 수용소의 성격 등 파악해야 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지역도 12곳에서 5곳으로 통폐합되었다는 내용과 정치범의 규모를 20만 명으로 판단하는 근거, 국가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관리소와 인민보안성이 운영하는 관리소의 성격 등 정리 안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최근 확보할 수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자료와 북한의 관리소 운영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치범수용소의 실체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축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운동적

차원에서 한견주의로 관심을 끌어보려는 시도가 잦았다.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나 접근이 쉽지 않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장면과 증언, 자료를 입수하는데 주력한 나머지 신뢰할만한 자료를 종합화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부족했다.

6. 북한인권실태 조사방법의 개선책

- (1) 자료의 종합화가 필요하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실태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적 인권침해 사례로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전체적인 숫자와 정치범의 규모, 각 수용소의 성격 등 파악해야 할 부분이 많다. 단편적 정보들을 종합적 자료로 체계화할 수 있는 연구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 (2)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 사람들의 행방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북한인권의 열악한 실상을 폭로하기 위해 충격적 사건 하나를 확보하여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방식의 센세이셔널리즘이나 상업주의를 자제하고 침해사례가 보고된 이후 그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집념이 있어야 한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북한과의 인권대화 및 외교접촉에서 안승운 목사의 거취를 빼놓지 않고 묻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도 침해 당사자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한사람 한사람의 근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 (3) 탈북자의 수기·경험에 의존하던 방식을 넘어서 다각적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동영상, 위성자료 등 정보수단과 기술이 발달하였으므로 동원가능한 수단과 기술을 활

용하여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4) 가해자 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더 확보해야 한다.

인권침해의 피해사례만으로는 북한인권실태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및 기타 구금시설에서 북한주민의 통제와 조직적인 인권 침해 정책에 관여했던 가해자 측의 증언을 확보하여 북한인권실태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북한의 ‘조선인권연구협회’와 협력 하에 인권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가져오려면 북한당국과의 접촉도 필요하다. AI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대답을 듣고 피해자 면담도 실시하였는데, 제기된 문제에 대해 북한측의 입장을 듣는 것도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하면서도 문제의 지난 20년 동안 탈사회주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갈등이라는 정치적 조류와 함께 맞물려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급적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인권문제를 접근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남북이 인도주의 대화 같은 것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을 수 있다. 이제는 인권침해의 피해자만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당사자를 면담하고 조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의 정치적 지배구조와 자유권 조사방법

김 종 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연구교수)

I. 들어가며 : 북한 인권문제의 연구경향

우리는 인권이 보편적이며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만큼 인류 역사에서 최근처럼 인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와 담론으로 등장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인권은 분할할 수 없고(indivisible), 남에게 빼앗길 수도 없는(inalienable) 보편적인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미셸린 이샤이, 2005: 48). 근대 인류역사의 진보적 발자취와 비참한 폭력·전쟁의 빛과 어둠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보석’으로 인권을 규정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과학적 접근과 현실적 적용이 가능한 정책적 방향과 수단의 개발이 절실하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는 난마와 같이 얽혀있어서 풀기 어려운 ‘고르디우스(Gordius)의 매듭’과 같이 보인다.

특히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충돌은 이념적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대비되어 한국사회 내부의 분열 고리로 작동하고 있다. 문제의 해결보다는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서로를 적대시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이 더욱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문제 연구가 ‘이론의 빈곤과 정책의 과잉’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서보혁, 2007: 12). 즉 이데올로기적 입장으로 윤색되어 사태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경향, 그리고 객관적 지표로서의 활용에 한계를 갖는 정책학적 수준의 연구들이 중심을 이루었다는 점에 대한 성찰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 첫째, 북한의 인권실태를 추적·연구하는 백서형태의 작업, 둘째, 유엔인권레짐과 북한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셋째,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에 대한 연구, 넷째,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북한 인권문제를 객관적·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와 비판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론적 논의의 활성화를 통해 대안으로 접근하려는 노력과 결합될 것이다.

최근 이론적 틀을 도입하여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연구 성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성과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의철(2002)은 ‘사회화’라는 관점을 통해 ‘외교적 차원에서의 사회화와 실질적 사회화’를 구분하여 북한 인권문제를 분석했다. 박순성(2005)과 김수암(2005)은 랜드만(Todd Landman, 2004)의 ‘원칙상의 권리’(right in principle)와 ‘실제상의 권리’(right in practice), 그리고 ‘정책 결과’(policy outcome) 등을 활용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했다.²⁾ 서보혁(2006)은 내재적 시각으로부터 출발하여 외재적 시각의 상호보완적 접근을 제안했다. 허만호(2008)는 억압(repression), 거부(denial), 전술적 용인(tactical concession), 시효에 의해 얻은 상태(prescriptive status), 규칙에 일치하는 행태(rule-consistent behavior) 등 ‘나선형 5단계론’(five-phase spiral model)³⁾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분석했다.⁴⁾

발표문은 북한 인권실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 중에서 “정치적 지배구조와 자유권 조사방법”이라는 한정된 영역을 다루었다. II장은 북한 인권문제를 접근하기 위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쟁점과 이 문제의 북한적 적용문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간략하게 다루었다. III장은 북한의 정치적 지배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북한 자유권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대한 방향을 모색했다. IV장은 북한의 자유권 실태 파악을 위한 새로운 조사방법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발표문의 한계는 가능성의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구체적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충

1)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추적을 진행하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통일연구원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속적인 세미나와 발간자료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으며,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와 다양한 북한인권 관련 연구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다.

2) 김수암(2008)은 최근 논문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전략적 관점과 관계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것으로 제안하면서, 전략적 관점에서 ‘거부’, ‘선택적 협력’, ‘재도개선’으로 구분하고, 관계의 관점에서 ‘적대적 관계’, ‘비적대적 관계’, ‘적대해소’, ‘우호적 관계’로 구분하여 접근했다.

3) 국제규범이 매우 상이한 국내구조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연구·모형화한 것이 ‘나선형 5단계론’이다(Thomas Risse, Stephen Ropp and Kathryn Sikkink, 1999).

4) 이외에도 정태욱(2006), 이원웅(2007) 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방법으로서 유의미성은 구체적인 학문적 검증이 필요하며, 더 나은 조사방법을 위한 작은 징검다리 정도라고 판단된다.

II. 북한 인권문제 접근의 쟁점과 북한의 반응

1. 북한 인권문제 접근을 위한 쟁점 분석

1) 보편주의적 인권관과 문화 상대주의적 인권관

인권의 본질에 대한 오래된 논쟁인 인권개념의 보편성과 문화적 상대주의의 문제이다. 보편주의적 인권관은 다양한 국가 또는 집단의 문화적 특성과 그에 기인한 인권의 발달과정을 포용하지 않고 획일적 순응을 요구할 경우,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역으로 문화적 상대주의는 문화적 특수성을 무기로 실제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서보혁, 2007: 30~31). 따라서 인권개념을 둘러싼 오래된 논쟁을 당장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양천수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합법성’의 원칙과 ‘단계적이고 상호적인 접근’을 제시한다. 즉 북한을 우리와는 다른 독자적인 주권 국가 혹은 이에 상응하는 국제법상 단체로 승인하고, 인권의 (잠정적)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고유하게 마련하고 있는 인권이해나 인권법체계의 합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2007: 227~229). 서보혁은 브렘스(E. Brems)의 ‘포괄적 보편성’(inclusive universality)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즉 인권규범 내에 있는 특정 문화, 서유럽의 개인주의·자유주의 문화를 벗겨내어 인권을 모든 문화가 수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핵심으로 개념화하자는 것이다(Brems, 2001: 308~318; 서보혁, 2007: 32에서 재인용).

따라서 보편적 입장과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현실에서 조합하려면, 인권문제의 점진적 접근으로서 시간적 차원, 최소 보편주의(minimum universalism)로부터 시작하여 확산시키는 단계적 접근으로서 공간적 차원, 인권문제에 있어 상호적 접근으로서 관용과 존중의

인권레짐을 형성하는 국제적 차원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⁵⁾

그러나 이런 논의 모두 ‘절충주의’적 시각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제적 인권규범이 강대국의 현실주의적 ‘권력정치’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무엇으로 강제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거부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가? 강대국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매개로 한 국가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주의적 입장과 실제적인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가? 등 무수한 난제가 쏟아져 나온다. 즉 “현실의 권력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보편적 인권의제는 강대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략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이샤이, 2005: 47).⁶⁾ 또한 국제적 인권규범과 주권이 만나는 공간에서 충돌이 발생한다. 주권이 인권의 보편성을 막는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주권을 우회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 될 수도 있다.⁷⁾ 따라서 인권의 보편적 입장은 현실에서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인권문제와 관련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사회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인권개선 주장에 대해 ‘체제를 전복하려는 기도’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며 북한의 인권문제에 접근할 때, 인권의 당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인권의 보편적 입장을 추구하되 최소 기준적 접근과 함께 점진적·단계적·상호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자유권과 사회권, 제3세대 인권의 충돌

인권의 본질문제와 연동하여 자유권과 사회권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⁸⁾ 이는 주로 강

5) 이와 관련 롤즈는 국제사회의 공통적 기반인 인권의 범위를 ‘절실한 권리’ 즉 생존의 권리, 노예와 예속 상태로부터의 해방, 소유권(일신상의 소유권), 양심의 자유(그러나 평등한 자유는 아니다), 형식적 평등 등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한다(Rawls, 2001: 65; 정태욱, 2005: 54에서 재인용).

6) 미셸린 이샤이(Micheline Ishay)는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인권개념은 서구에서 출발했으나 모든 사회와 문화 속에서 장구한 역사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자유권(제1세대 인권)·사회권(제2세대 인권)·문화권(제3세대 인권) 간의 갈등은 서로가 서로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면서 구성되어 왔던 과정에 대한 몰이해라고 비판한다(2005: 36~40).

7)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은 표면상 탈정치화된 인권정치란 특정한 경제적·정치적 목표에 봉사하는 군사개입주의의 이데올로기임을 지적하는 일반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인권의 보장이라는 당위는 자유민주주의와 전 지구적 시장경제로의 편입이라는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부시 행정부에 의한 이라크침공을 들고 있다(2006: 397~398).

대국과 약소국,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의 논쟁이다.⁹⁾ 자유권은 서구 국가에서, 사회권은 사회주의국가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을 강조하는 순간 인권의 목록은 서열화 또는 차별의 목록으로 변질된다. 즉 자유권 중심으로 인권담론을 주장하게 되면 법적 방향은 자유주의적 모델로 발전되고, 사회권 중심으로 인권담론을 주장하게 되면 사회복지국가 법 모델을 지향하게 된다. 인권의 현실적 규범력인 법적 방향의 차이는 갈등을 표상하게 된다. 따라서 쌍방은 자신의 입장을 절대화하는 방향으로 치닫게 되고 인권규범의 국제적 합의의 지향은 갈등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즉 문제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인권의 현실적 적용이 언제나 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박구용, 2004: 160).

이는 또한 법제화 된 인권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정 또는 개정된 법이 지배 권력의 수단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 관료제의 위계구조 하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법과 현실의 심각한 균열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법률화 된 인권은 현실의 작동과정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게 된다. 심각한 빈부의 격차, 저발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유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도, 균등한 분배와 복지시스템만을 강조하며 자유로운 발언, 참여, 결사 등을 보장하지 않는 것도 인권규범을 도외시 하는 것이다.

또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발전권, 평화권 등은 또 다른 입장의 갈등적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¹⁰⁾ 제1세대 인권(자유권), 제2세대 인권(사회권), 제3세대 인권(문화권: 자결권, 발전권, 문화적 유산의 존중, 인도주의적 지원 등) 등이 역사적 궤적과 국제관계의 영향 아

8) 국제인권규약에 의하면 자유권 규약(1966년)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 노예상태 및 강제노동 금지,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금지, 거주 이전 및 주거 선택의 자유,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 형법의 소급적용 금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상·양심·종교·표현·집회·결사의 자유, 공무 참여와 선거 및 피선거권과 같은 참정권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사회권 규약(1966년)은 근로권, 노조결성 및 가입의 권리,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의 권리, 문화생활 영위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예를 들어 자결권, 발전권, 문화적 유산 존중, 인도주의적 원조, 평화권 등이 3세대 인권 범주로 간주된다(서보혁, 2007: 41~42).

9) 자유권은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권으로 등치될 정도로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보편주의의 대 상대주의 논쟁에서 보편주의의 역사적·정치적 논거가 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세계 각국에 대한 ‘연례인권보고서’ 내용은 대체적으로 자유권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서보혁, 2007: 41).

10) 198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발전권 선언에서 발전권은 “포괄적인 경제·사회·문화·정치적 과정”으로 정의하고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박탈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다. 1984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평화권 선언은 핵전쟁 위협의 제거, 무력사용 중단,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이 평화권 실행을 위해 요청된다고 밝히고 있다(서보혁, 2007: 61, 64).

래에서 각국의 입장에 따라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의 범주와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으나, 각 국가별로 그 강조점이 다르며, 그에 따라 인권을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재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권, 사회권, 문화권 등 확장되는 인권규범의 진보의 역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이 불가분의 몸체임을 인정해야 하며, 새롭게 부각되는 제3세대 인권의 문제를 조화롭게 수용·확장해 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강대국들과 인권선진국들의 국제적 리더십과 관용·포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를 개인의 시민적·정치적 자유라는 협소한 측면으로 축소해서 접근하는 경향이 적합한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국가별로 상이한 인권 기준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괄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¹¹⁾ 국제적 인권규범이 존재하지만, 장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그런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조건, 정치·역사적 맥락과 환경, 국제정치적 상황과 환경 등 역사적·구조적 접근이 요청되며, 평화권·개발권 등 새롭게 부각되는 제3세대 인권적 가치에 대한 진보적 수렴도 필요하다.

3) 인권침해의 원인과 해법의 접근 문제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무기로 체제를 전복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적성국교역법’에 의한 장기적 봉쇄와 사회주의권 국가의 붕괴 등으로 인해 북한에서 경제난·식량난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침해가 심각해졌다는 것이다(우승지, 2006: 196). 반면에 북한 체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과 통제시스템에 의해 장기간 북한주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 스스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비판적 입장이 국제사회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를 두 가지 차원에서 분리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북한의 현 정치적 지배구조에서 인권침해는 해소될 수 없는가와 또 하나는 실제 북한인권의 침해수준이 어느 정도인

11) 미국의 경우, 현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비준하지 않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만 비준한 상태이다(서보혁·이유진, 2006: 104). 이러한 현실은 인권의 보편적 구현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가이다. 북한인권 침해수준은 정보의 정확성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즉 탈북자 증언과 축적된 정보의 객관성과 신빙성 문제이다. 탈북자 증언의 객관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주로 과장되거나 실제 경험하지 않는 청취수준의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증언하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또한 탈북자의 증언을 마치 과거의 확실한 재현인 것처럼 서술하거나, 연구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가공되는 문제도 있다.¹²⁾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인권침해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발간된 『북한인권백서 2008』의 내용을 보면, 시민적·정치적 인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소수자 인권, 분야별 인권에 대한 실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2008)에 의하면 549명의 탈북자 면접 결과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이런 상황의 지속을 서방의 경제봉쇄조치와 이미 20여년이 흘러간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외인론’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으며 사실과 부합되지도 않는다. 국제인권규범에 있어 생존권적 문제의 부분적 요인으로서 경제봉쇄정책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것은 북한 스스로 주장하는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주권의 구성원인 주민들의 굶주림에 대한 궁극적 책임도 바로 주권의 표상인 북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북한정부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단 이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실태를 과장 또는 축소하려는 정치적 개입의 문제를 철저히 막을 수 있는 객관적·과학적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북한 인권실태를 과장하는 것이 북한정부 붕괴를 위한 의도로, 또는 축소하는 것은 친북적 의도로 예단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도 연구·조사 작업의 객관성·과학성은 절실하다.

둘째, 북한사회에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모든 것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국과 EU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이라는 북한의 비판을 고려할 때, 좀 더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한이 장기간의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문제의 정치적·전략적 접근은 남북관계의 지속과 발전을 지체시킬 것이다.¹³⁾

12) 최봉대(2003), 정성장(2004), 정은미(2005), 서보혁(2007: 14) 등 참조.

셋째, 북한의 인권실태와 무관하게 주민들의 생존권적 권리의 문제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아에 의한 죽음 또는 질병의 창궐문제는 특수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인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생존이라는 바탕 위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수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인도적 지원은 탈정치적 지원임과 동시에 관계증진의 유의미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응

1) 국제사회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공세적 입장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공세적 입장과 전술적 용인의 이중적 태도로 요약할 수 있다. 공세적 입장과 관련하여 우선 북한은 국제사회가 문제제기하는 북한 인권침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즉 북한은 ‘우리식 인권개념’¹⁴⁾에 의해 인권이 고도로 존중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주장하는 인권침해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¹⁵⁾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정치적 활용과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은 유엔인권위원회와 서방국가들의 이해가 반영된 요구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한다.

특히 북한은 서방국가들의 ‘인권’을 “인민들의 자주적 권리가 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저들의 탐욕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소수 지배계급의 무제한한 특권”이라고 비판하면서, 서방국가들의 인권침해를 열거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최정애, 2002: 62~63). 역으로 북한의 ‘우리식 인권’은 그 자체가 인권을 보장한다는, 즉 사회주의

13) 북한 인권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① 분단체제의 영향, ② 정치경제시스템의 지속과 변화, ③ 1990년대 이래 지속된 경제 위기의 충격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구조적 맥락과 북한사회의 변화를 핵심변수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북한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이에 근거한 정책수준에서 잘못된 판단과 접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Park sunsong, 2005: 347).

14) 이는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로동신문』(2001.3.2)에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각이한 전통과 민족성,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발전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개 나라의 인권기준과 보장형태도 해당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백서 2008』(이금순 외, 2008: 29에서 재인용).

15) 『로동신문』, 2001.3.16; 김수암(2001: 339)에서 재인용.

제도의 구현은 곧 인권의 구현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북한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모든 논란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¹⁶⁾

둘째, 국제사회와 강대국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체제를 전복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¹⁷⁾ 특히 미국을 지목하며 인권은 곧 내정간섭과 침략을 위한 도구로서 궁극적으로 정권교체를 노리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즉 “인권문제가 미국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 실현의 도구로, 다른 나라들에서의 정권교체 등을 위한 저들의 비법행위에 <<합법성>>의 외피를 씌우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한다.¹⁸⁾

북한은 이런 위협 때문에 국가주권을 인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2008.9.16)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튼튼히 고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권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가 주권을 떠난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테제이다.

단 이러한 주장이 북한의 인권실태를 호도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언술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매개로 국가이익을 위한 현실주의적 국제정치가 작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¹⁹⁾

16)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들에게 참다운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사회주의 리념이 실현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는 인권문제란 있을 수 없다...사회주의는 인권을유린을 낳는 사회적 근원 자체를 청산하고 당과 국가가 인민대중에게 모든 삶의 권리를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장하여 주는 인권존중의 우월한 사회이다.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끌어 올린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국가 관리를 비롯한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권리는 물론 로동에 대한 권리,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 배우며 치료 받을 권리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모든 권리가 실질적으로 훌륭히 보장되고 있다(최정애, 2002: 64).”

17) “미국이 해방법, 민주주의법, 인권법을 제정했을 때는 예외 없이 정권 교체, 체제 전환을 노리거나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한 예비전에 들어섰다(『조선신보』, 2004.10.2).”

18) 『노동신문』, 2006.2.11.

19) 영국 전 수상 토니 블레어는 “세계를 둘러보면 비민주적이고 야만적 행동을 하는 정권이 아주 많다. 만일 우리가 이 세계의 모든 악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그런 국가들에 개입하는 것 말고 할 수 일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T. Blair, 1999: 9; 알렉스 칼리니코스, 2008: 108에서 재인용)”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이후 밀로셰비치가 코소보에서 저지른 잔혹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전쟁에 개입했다. 문제는 이런 잔혹행위는 터키와 콜롬비아에서도 발생했다는 것이며, 이 두 국가는 서방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위의 책, 2008: 108-109). 이런 차원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강대국의 이중적 태도와 국가이익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셀라스(2003), Chomsky(2005), 지젝(2006), 하워드 진(2008) 등이 있다.

2) 국제사회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전술적 용인

이러한 공세적 입장과 함께 국제인권규범을 전술적으로 용인하는 이중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술적 용인과 관련 우선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규약의 이행결과를 제출하는 등 부분적으로 국제적 기준을 이행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에 가입했다.²⁰⁾ 또한 가입된 규약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표-1 참조).

< 표 -1 > 북한의 국제인권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현황

협약	최초보고서		2차 보고서		3차 보고서	
	제출예정일자	제출일자	제출예정일자	제출일자	제출예정일자	제출일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82.12.13	84.4.2	87.10.13	2003.3.20	2004.1.1	미제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83.9.1 87.9.1	84.12.18 89. 1.14	92.6.30	2002.4.12	2008.6.30	미제출
아동권리협약	92.10.20	96.2.13	97.10.20	2002.5.16	2007.10.20	2007.12.10
여성차별철폐협약	2002.3.27	2002.9.11	2006.3.27	미제출		

출처 : 김수암(2008: 33).

국제인권규약 가입과 보고서 제출이 직접적으로 북한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인권관련 비난을 무마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유엔인권레짐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실행을 통해 무마하면서 동시에 북한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사회에 인권침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각종 인권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압박을 무마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1998년 헌법개정을 필두로, 2000년대 들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등 인권 개선 방향의 법률적 조치를 취했다. 이런 법률개정은 북한의 체제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20) 단 고문방지협약 및 동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아동매춘 및 포르노그래피 관련 아동권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장투쟁관련 아동권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서보혁, 2007: 92).

주지 않으면서 이미지 개선효과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의 함의를 갖는데, 국제사회의 거센 인권관련 요구에 대한 전술적 용인 및 실행이라는 측면과 외형적인 법적 변화를 취하되 실제 작동과정에서는 거의 실행되지 않는 ‘전시 행정적’ 측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이중적 반응과 관련하여, 공세적 입장은 원칙상의 권리와 실제상의 권리간의 커다란 간극을 유추할 수 있으며, 전술적 용인은 북한 인권실태의 점진적 변화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어느 일면만 강조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 오류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국제인권규범의 준수 수준이 미약하지만 점진적인 변화와 수용의 중요성을 이해해 가고 있다는 점과 전술적 용인의 수준이지만 법률적 제·개정을 실천한 것 등의 ‘작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Park sunsong, 2005: 351~353). 이 변화마저 미미한 것이라고 부정해버린다면 북한의 인권태도를 변화시킬 접점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단 법률적 변화와 실제적 적용에서 발생하는 간극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Ⅲ. 북한의 정치적 지배구조와 자유권의 관계

1. 북한의 정치적 지배구조

1) 국가강권과 북한주민

북한의 정치적 지배구조는 수령(상징권력)을 정점으로 관료제적 위계질서에 의해 일원적으로 편제된 당·국가체제라고 할 수 있다.²¹⁾ 따라서 지배의 관철은 상징권력을 정점으로 관료제를 통해 실행된다. 지배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지배자(지배집단)의 이익을 유지·확대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런 만큼 지배 관철과정에는 근본적

21) 막스 베버(Max Weber)는 일반적 의미에서 지배를 “자신의 의지를 타인의 행동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했으며, 피지배자가 복종하는 것은 지배에 복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최소한도의 이익에 의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배의 상황은 지배자(지배집단)의 명백한 의지(명령)를 피지배자가 마치 자신의 행동강령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Weber, 1968: 942~946). 베버의 정의에 근거, 지배구조는 지배자(지배집단)의 명령이 피지배집단에게 관철되는 메커니즘으로 규정한다(김종욱, 2008: 371~372).

으로 착취와 희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북한사회는 ‘선군정치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들은 선군정치의 원칙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국가의 지침을 따르고 수행해야 한다.

이런 대의명분과 함께 지배자(지배집단)는 자신의 이익의 보존·확대라는 근본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체제의 유지, 공권력의 유지·강화, 이데올로기의 생산과 유통 등을 위해서는 대중적 동의와 물질 자원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조론이 폭력과 공포 그리고 정치적 설득이라는 방법을 통해 지배를 관철시켰던 것처럼 북한도 유사한 방식을 통해 지배를 관철시켰다.²²⁾

만약 대중적 동의의 기반이 허물어졌을 경우, 지배자(지배집단)는 국가의 이름으로 강권에 의존하게 된다.²³⁾ 북한은 계획경제와 배급제의 붕괴 등으로 인해 국가가 인민을 부양할 능력을 상실했으며, 이는 대중적 동의 기반의 약화로 이어졌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강권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높아지게 된다. 강권의 활용이 높아진다는 것은 공권력의 강화와 법률적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며, 이는 감시와 통제의 강화로 직결된다. 그런 한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는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로 진입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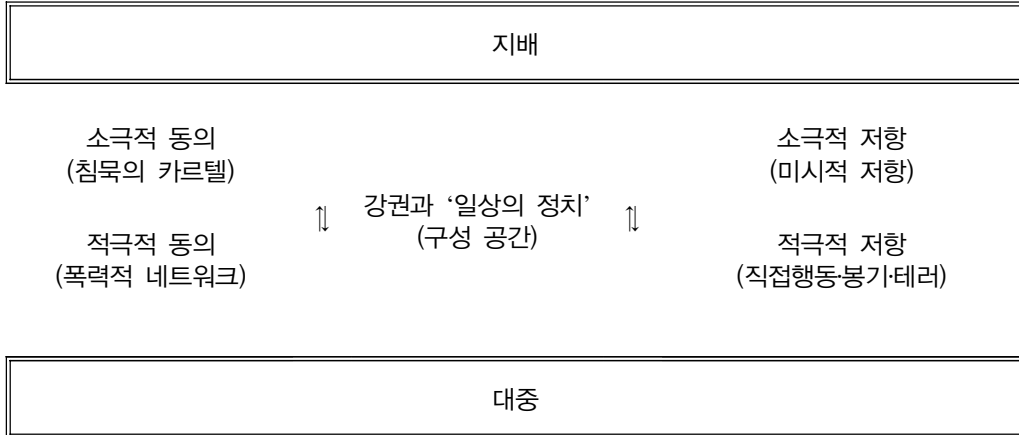
따라서 이는 국가의 강권이 강화되는 것이며, 과거의 일반적 행위가 현재는 위법적 행위로 변경되어 희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강권에 대항하는 행위는 필경 희생을 동반한다.²⁴⁾ 강권은 국가의 미명 아래 합법적 권한으로 정당화되며, 지배자(지배집단)의 ‘자의’와 ‘사적’ 판단에 의해 행사되는 강권도 합법의 형태로 관철된다. 따라서 강권과 북한주민이 접촉하는 지점에서 인권침해는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식량난·경제난 → 국가통제력 약화 → 사회적 이탈 급증 → 국가의 강권 강화 → 희생·피해(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의미한다.

22) 필자는 북한 지배자(지배집단)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스템의 변경을 통해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판옵티콘적 관료체제’라는 구조물을 구성했고, 그 구조물 위에 ‘가산제적 지배’가 없어진 변형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한다. 그 사회는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 권력기술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이었으며, 사회의 구성원은 ‘주체형의 인간’이 될 것을 강요받았다(김종욱, 2006). 따라서 북한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를 내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으로 전환됨으로써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의 구조화와 역으로 인권침해에 저항할 수 있는 동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23) 강권(violence)은 "다른 사람과 집단의 조작, 배제와 감금, 파괴를 위한 도구적·수단적 능력"의 의미한다(한나 아렌트, 1999).

24) 국가폭력은 사회의 제집단, 계급·계층의 투쟁에 대하여 강압적 수단을 활용하여 억압하고 통제하는 국가적 행위를 의미한다(조희연 외, 2002: 24).

< 그림 - 1 > 북한사회의 동의와 저항의 메커니즘



1990년대 중반 이전 북한은 적극적 동의와 소극적 동의를 기반으로 적극적 저항에 관해 집중적인 강권을 사용했다면, 이후로는 소극적 저항에 대한 집중적인 강권사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인권규범에 있어 자유권이 더욱 제약당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 정부는 소위 말하는 벤담(Jeremy Bentham)의 관옵티콘(panopticon) 원리(Bentham, 1962)에 의한 사회통제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²⁵⁾

2) ‘행정법적 제재’와 북한주민

북한은 1998년 개정 헌법을 통해 ‘공민의 거주·여행의 자유’를 신설(제75조)했고, 2004년 ‘최고인민회의 정령 432호’를 통해 형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채택, ‘노동단련형’ 도입, 사법기관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 단순 탈북자 처벌 완화 등 인권 측면에서 진일보한 변화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담론은 다른 각도에서 포착된다. 북한은 2004년 형법 개정 이후 ‘인민민주주의독재’와 법에 의한 통제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 우선 북한은 ‘인민민주주

25) 북한의 사회통제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우영(1999) 참조. 그러나 1960년대와 달리, 최근 전개되고 있는 사회통제체제의 강화는 북한 주민과 관료의 ‘일상의 정치’(politics of everyday)에 의한 수동적 대응의 성격으로 점차 전환되고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독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반혁명분자들의 책동과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제도를 옹호 고수할 수 있으며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철저히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런 원칙하에 “반사회주의적 범죄행위를 감행한 적대분자들을 체포하고 재판하며 그 죄과에 따라 징벌하는 것은 진압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규정한다(현웅삼, 2005: 17).

또한 북한은 현재 정세를 ‘반제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면서, “① 적대분자와 불순이색분자들에 대한 징벌의 도수를 가일층 높여나갈 데 대한 문제, ② 군력 강화를 최우선시하며 이를 반대하는 현상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반역적인 행위로 보고 이런 현상에 대하여 무자비한 제재를 가하도록 할 데 대한 문제, ③ 당의 독창적인 선군혁명사상을 옹호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생활원칙을 지킬 데 대한 문제” 등을 제기했다. 따라서 북한의 법은 이런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은경, 2005: 31).

법률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2004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6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이다(장명봉 편, 2008: 116~131). 북한은 이를 ‘행정법적 제재’라고 지칭한다. 행정법적 제재는 “국가의 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즈먹는 여러 가지 형태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비록 사회적 위험성이 적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에 해당하는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정연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규정된다(리성국, 2006: 29). 문제는 재판절차 없이 이 권한을 국가기관의 심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형벌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지우는 행정적 제재”(제7조)라는 점이다.

이 정의에 근거하여 29조부터 174조에 이르는 처벌대상이 적시되어 있다. 위법행위는 ① 경제관리질서를 어긴 행위, ② 문화질서를 어긴 행위, ③ 일반행정질서를 어긴 행위, ④ 공동생활질서를 어긴 행위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행정처벌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 검찰, 재판, 중재, 인민보안기관, 검열감독기관이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가능하다. 처벌의 대상은 직무, 기술, 노동, 물질, 기업 및 영업상 처벌로 분류되며, 위법의 경중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노동교양(5일 이상 6개월 이하), 강직, 해임, 철직, 벌금, 중지, 변상, 몰수, 자격정지(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강급, 자격박탈 등이 실행된다. 즉 모든 기관과 모든 공간, 모든 행위에 적용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형법의 전면 개정(2004.4.29) 직후 제정된 ‘행정처벌법’(7.14)은 형법의 인권적 측면의 진일보성을 인정한다는 평가를 무색하게 하는 법 제정이다. 또한 형법개정과 ‘행정처벌법’ 제정 이후 ‘인민민주주의독재’ 기능의 강화와 법적 통제의 강화는 북한 내부공식문헌의 주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북한은 각종 강권기구들의 권한 강화와 내부 공식담론(인민민주주의독재 기능과 법적 제재 강화)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바로 직접적인 주민과의 빈번한 충돌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호위사령부 등 직접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자의적 법해석과 법집행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비사그루빠’의 감찰사업은 체포와 구금, 형벌, 숙청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법에 근거한 정당성을 확보한 강권의 활용은 지배의 입장에서 채택하기 쉬운 전략일 수 있으나, 강권기관 집행자들의 자의적 판단과 권한 남용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는 직접적인 인권침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즉 북한 지배자(지배집단)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강권기구와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다.²⁶⁾

2. 북한 인권(자유권) 상황과 접근방향

북한인권 특히 자유권은 다양한 증언과 관련 자료들을 볼 때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사회권(인권규약 A)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08』에 의하면, 자유권(시민적·정치적 인권)²⁷⁾

26) 여기에서 아감벤의 도발적 문제제기인 ‘호모 사케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누구든 수용소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내부와 외부, 예외와 규칙, 합법과 불법이 구별되지 않는 지역으로 들어서는 것이며, 거기서 개인의 권리나 법적 보호라는 개념들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아감벤, 2008: 322).” 이 공간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는 추방령을 받은, 터부시 되는, 위험스러운 자이며, 죽어도 처벌받지 않지만 희생물로 바칠 수 없는 생명을 대표한다(앞의 책, 168). 즉 집단수용소의 유대인이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난민들처럼 정치사회적 생명은 없고 생명만 남은 사람들이다. 어떤 국가·인종·지역·성·지위를 막론하고 지구상에서 이런 극단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27)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자유권은 B 규약을 의미한다. 『북한인권백서 2008』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중 ‘자유권’은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의미한다.

을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평등권, 자유권, 종교의 자유, 참정권 등으로 분류한다.²⁸⁾

따라서 세 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는 인권의 보편적 측면을 북한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둘째,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며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중적 측면을 어떻게 북한 인권문제 접근에서 지양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셋째,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인권의 증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1)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필요성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인권침해 실태를 외면하는 것은 타당한 접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구상의 양 체제(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근대성이라는 기반 위에 성립된 체제이다. 근대성이라는 역사적 추세 속에서 자본주의와 국민국가가 발전해 왔고, 그 과정에서 ① 폭력의 독점, ② 감시사회, ③ 사적 소유, ④ 환경의 변형이라는 네 가지 억압적 차원이 표출되며, 근대성과 지배의 결합 과정에서 억압은 더욱 강화되었다(Giddens 1987; 조효제 2007: 163에서 재인용).

억압은 국가폭력으로 상징되며, 국가폭력에 맞서 대중들은 저항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이 저항의 역사에서 수많은 희생이 발생했으며, 이 희생의 과정에서 대중은 새로운 가치의 발견 즉 ‘각인’(刻印)을 통해 행동으로 실천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발전한 내적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국가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체제와 이념에 의해 개인 또는 대중의 정당한 저항이 희생으로 귀결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희생과 피해는 북한사회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즉 격리와 분할을 위한 구금과 강제 추방, 구금시설 및 검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문과 폭력적 압수수색, 강제동원, 구금시설의 비인간적 처우, 공개 및 비공개처형, 현지공개재판²⁹⁾ 등이 벌어지고 있다.³⁰⁾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런 인권침해는 국가 차원의 법률적, 실제적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28) 『북한인권백서 2008』은 탈북자 증언, 각종 자료 등을 통해 인권침해의 다양한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다.

29) 북한은 현지공개재판을 수백 수천의 군중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는데서 가장 좋은 준법요양형식의 하나라고 주장한다(리창세, 2006: 63).

30) 구체적 사례는 『북한인권백서 2008』(2008: 40~195),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의 『오늘의 북한소식』(www.goodfriends.or.kr) 참조.

단,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보편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현실의 작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최소 기준과 점진적·상호적 접근이 필요하다.³¹⁾ 어느 국가든 인권의 보장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권문제는 법률적 규정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발전의 역사 속에서 성숙하는 것이다. 특히 인권의 발전이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과 국가폭력, 그리고 지배이익을 위해 인민의 빈곤을 방치해 왔던 어둠의 역사 속에서 비약적 발전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이중적 함의를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 압력이 국가폭력을 강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장은 어찌 보면 ‘인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국가의 과업을 수행하는 집단세계 속의 삶에서 개인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삶의 접촉은 자신의 권리를 발견하게 되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가폭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2)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이중적 접근의 지양

북한 인권문제의 핵심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목적에 부합되도록 북한 인권침해의 시정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듯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려거나, 서구식 가치를 이식시키려는 것이라면 북한 당국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서방국가들의 인권문제 접근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즉 인권의 보편성 주장이 본질적으로 서방의 정치 관념을 특권화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한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각 국가 내의 정치질서에서 법률적 수준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노골적인 인권위반에 대해 국제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인 입장이 개선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인권의 보편성을 관철하기 위해 국가의 이익을 포기할 것인지, 빈곤국에 대한 원조가 인권상황 개선 여부와 정도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된다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2006: 702~703).

31) 박순성(2005: 366~367)은 북한 인권문제의 정책적 대안의 원칙으로 ①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구조적·역사적 평가, ②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 우선순위(식량권, 생존권)의 문제, ③ 실사구시적 접근으로서 단계적이며 건설적인 접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역사적 과오와 이중적 잣대에 대한 비판도 지적되고 있다. 이 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압박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논리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리원룡, 2006: 57~58; 최정애, 2002: 62~64 등 참조). 즉 서방국가들이 과거에 저지른 많은 범죄, 최근 벌어지고 있는 망명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태도가 인권의 보편성에 비추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2006: 712).

따라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접근에 있어 가급적 정치적 접근을 배제할 수 있도록 ‘구체에서 원칙으로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비정치적 영역에서 정치적 영역으로의 단계적 접근, 인도주의적 영역에서 경제협력의 영역으로의 접근, 법률적 영역에서 일상적 영역으로의 접근 등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이 보장 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 강도와 행동 수위가 높아지면, 북한은 즉각적으로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적’으로 규정한다. 이 가상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가 발생한다. 즉 인권적 가치의 강조가 체제의 단결을 위한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악순환 구조로 귀결된다는 것이다.³²⁾

또한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와 압력을 통해 부분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역사 속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만약 북한 주민들의 자생적 투쟁 속에서 확장되고 확보된 인권의 영역이 아니라, 외부적 압력과 상호주의에 의한 ‘주고받기 식’ 흥정외교로 확보된 인권이라면, 마치 모래성과 같다. 국제사회의 인권노력과 외교적 설득·압박이 일정 수준에서 유의미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역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중적 구조 속의 딜레마’라고 지칭할만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32) 미국의 경우도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공격이 있는 지 불과 6주 만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비상 ‘미국 「애국법」’은 전시에 자유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대테러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일부 독재정권에 대해 지원을 늘렸던 사례 또한 마찬가지이다(미셸린 이샤이, 2005: 49).

3)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북한 특수성의 부분적 용인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처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조건, 정치체제의 구조, 역사적 궤적과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현실 적합한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즉 제3세대 인권으로 지칭되는 평화권, 발전권, 인도적 지원 등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을 시도해보자는 것이다.

현재 북한사회는 ‘북한 식 사회주의’ 체제의 고수 입장(정치체제의 구조)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저발전 상황(사회·경제적 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강대국으로부터의 ‘피포위의식’(역사적 궤적과 맥락)도 강력하게 자리 잡혀 있다. 이 상황에서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관철될 공간은 좁기만 하다.

따라서 평화적 공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속에 추진되는 동북아 국가들 간의 지역 평화 거버넌스의 구축, 저발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지원 및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식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인권개선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평화권과 발전권이 국제인권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나, 유엔 총회에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평화권 선언은 “핵전쟁 위협의 제거, 무력사용 중단, 그리고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서보혁, 2007: 44). 즉 모든 전쟁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자결적 차원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분단대결 상황의 지속, 북한 핵문제의 미해결이라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평화권의 모색은 인권문제와 함께 분단체제의 변화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권 선언은 저발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만성적 경제난을 고려할 때 발전권을 고리로 하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은 국제사회와 북한, 남한과 북한의 대화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보았듯이, 경제협력의 확대는 대화의 확대와 물자 교역의 확대, 상호 이해의 증진, 경제시스템에 대한 상호 인식 등의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주기적·만성적 식량난은 북한 체제 자체의 위협요소임과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은 상호주의적 관점을 버리고 탈정치적 관점과 인도적 입장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상호주의적 접근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가 개선되기 보다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원칙과 지속적 실천 속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개선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평화권 → 개발권 → 인권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며 많은 난관이 봉착할 것이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이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 시각과 각 국가의 주권의 영역을 넘어 사회의 구성원 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각 국가가 처한 특수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관용과 포용의 자세는 인권개념이 담지하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북한의 자유권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방법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수단의 개발과 그 실행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전에 선행되는 것은 정책수단 개발을 위한 근거로서 연구자들의 이론과 조사·연구 작업이다. 특히 분단체제라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문제는 정치화의 경향과 이념적 운색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자유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방법의 모색은 북한 인권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즉 북한 인권실태를 과장·축소·운색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 모색과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이 건설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론과 비교분석작업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북한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방법을 논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다. 첫째,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가 거대한 저항 없이 수용되고 있는 내부 메커니즘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접근의 과학성과 현실 적합성을 높여줄 것이다. 둘째, 북한 인권침해 실태의 객관적·과학적 조사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북한 인권문제 접근에 있어 우선순위와 접근 수단의 적실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수용소에서 저질러진 끔찍한 일들과 관련해 제기되어야 할 정확한 질문은,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 범죄들이 인류를 대상으로 자행될 수 있었는가라는 위선적인 질문이 아니다. 인간존재로서의 권리와 특권들을 어찌면 그토록 완벽하게 박탈했는지, 그들에게 자행된 어떤 짓도 더 이상 위법이 아닌 것처럼(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것이 정말로 가능해지게) 보이도록 만든 법적 절차와 권력 장치들을 주의 깊게 탐구하는 것이 보다 정직하며 또 무엇보다도 보다 유용할 것이다(조르조 아감벤, 2008: 323).

“북한 인권실태가 너무나 처참하다. 어떻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라는 문제제기는 현상을 설명할지언정 문제해결의 열쇠를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북한의 자유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지적처럼 ‘법적 절차와 권력 장치들’을 주의 깊게 탐구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북한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개처형, 현지공개재판, ‘비사그루빠’에 의한 폭력적인 검열과 가택수사, 불법연행과 고문 등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저항운동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북한 당국이 법률 제·개정(진전된 법률임을 주장하면서)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통제와 감시의 구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등에 대한 의문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런 작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침묵의 카르텔’을 통한 동의의 기반, 그리고 소극적 저항에만 그치고 적극적 저항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침묵의 카르텔’은 ‘폭력적 네트워크’를 용인하는 동의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소극적 저항으로 한정되는 상황은 강권기관의 폭력적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침묵의 카르텔’을 강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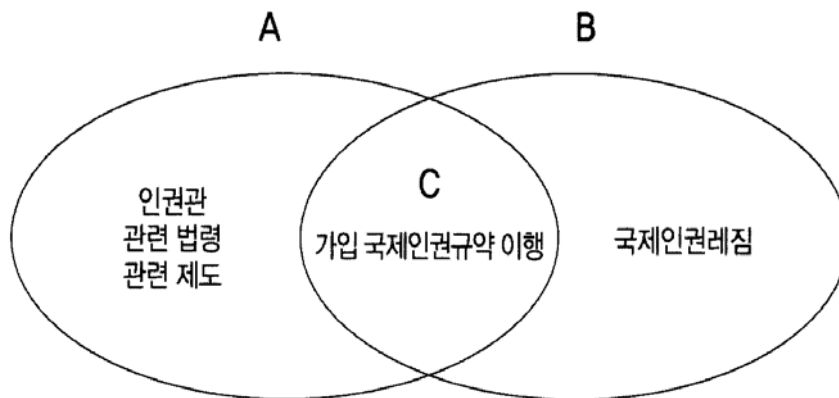
이 문제는 또한 원칙상의 권리와 실제상의 권리 간의 간극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이 될 것이다. 북한의 법률 제·개정이 인권문제에 있어 진일보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는 원칙상의 권리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원칙상의 권리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간과하게 한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의 법적 규정과 현실적 작동문제는 내재적 시각과 외재적 시각의 연계를 통해 실제적 사실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³³⁾

1.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는 시각

1) 내재적 · 외재적 시각의 연계

<그림-2>는 국제인권레짐(외재적 시각: B),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의 이행여부(내재적 · 외재적 시각의 공존: C), 북한의 인권관련 법령 · 제도(내재적 시각: A)로 분류하고, 내재적 시각, 즉 A의 영역에서 출발하여, C의 영역을 통해 합리적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서보혁, 2007: 135~137). 이런 접근은 합의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북한 인권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미 B의 영역에 대한 일정한 이해의 기반에서 출발한다고 전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 2> 내재적 · 외재적 시각에서 본 북한인권



출처 : 서보혁(2007: 136)

A의 영역을 강조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의 규범성을 존중하지만, 실제 북한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내부자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함

33) 여기에 탈북자 증언, 각종 북한 상주 외신 및 공관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 고도의 기술 장비에 의한 감청 · 위성사진, 휴민트(humint)의 정보 등이 결합된다면 더욱 객관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사항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의 입장에서 내재적 · 외재적 시각의 과학적 연계작업을 해야 한다.

이며, C에 영역에 의한 A 영역의 변화가 실제로 북한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04년 북한 형법개정은 북한 인권 차원에서 진일보된 측면으로 평가되지만, 그 이후 전개된 새로운 법률의 제정(행정처벌법)이 강권기구의 강화와 어떤 인과성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즉 국제사회의 인권적 압력에 대해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제스처는 취하되, 실제에서는 다른 방식의 통제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외부적 시각에 의해 북한 인권실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할지라도, 실제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인권의 감각은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외부적 시각에서 북한 인권실태는 당연히 심각한 것으로 규정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권리를 권리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의 요구는 북한 체제의 정당화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지방 자력갱생에 의한 지방예산제 및 자율권 강화가 분권화로 이해되어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실제 북한 당국의 ‘이중화전략’³⁴⁾에 의해 지방의 피폐화로 연결되어 사회권적 제약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인권압박에 의해 부분적인 법·제도적 개선을 취한 것은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오히려 다른 기제를 통해 자유권이 더욱 제약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내재적 시각에서 북한의 공식 담론의 변화, 탈북자 증언내용의 변화, 각종 정보 상의 변화 등을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이데올로기적 접근의 지양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곧바로 북한 인권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드러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중요하다. 이념의 프리즘으로 투영되는 당파적 접근을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첫째, 북한 인권문제의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접근, 둘째, 국제사회의 일방적 권고 수준만이 아닌 다양한 접근, 셋째, 인권의 최소 기준에 입각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의한 북한인권문제의 과장·축소·왜곡의 부정적 영향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34) 북한 당국이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이중화, 인민생활에 대한 배려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군수공업(중공업)에 대해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의미한다(차문석, 2007: 32).

또한 남북 간 상호 증진의 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남한정부의 관점에서 북한에게 인권개선 수용을 요구할 경우, 또는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남북협력의 선결조건으로 삼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다.

북한이 1981년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것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과 군부독재의 통치 등 남한의 인권침해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해석한다.³⁵⁾ 이처럼 인권문제를 자국 내의 실질적 인권개선이 아닌 타국의 인권침해를 공론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인권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남한사회의 인권침해도 동시에 시정하는 진일보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극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북한의 공개처형이다. 이는 당연히 근절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사형의 방법이 아니라 사형제 그 자체이다. 사실 남북한은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비준하지 않고 있다(서보혁, 2007: 406).³⁶⁾

2. 북한 인권실태 연구의 방법론적 다양성 : 객관적·과학적 접근

현재까지 북한 인권실태 조사는 주로 탈북자 증언과 각종 내용에 관한 통계적 집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점차 이론적 틀을 도입하여 구체적·입체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추상적 수준에서 몇 가지 북한 인권실태 조사방법에 대해 개

35) 만약 북한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촛불시위를 빌미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정간섭 또는 인권침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촛불시위가 발생했고, 이 시위에 대해 정부는 경제위기론과 준법을 강조하면서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 및 체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은 남과 북 모두 국가주의적 발상에서 인권을 규정하는 모순적 상황의 발생을 의미한다. 발상을 전환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국제사회에 개입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미국인(하워드 진, Howard Zinn)의 신랄한 비판은 국가주의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인들과 세계에 제공된 이유들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그 모든 설명들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것은 도덕적 목적에 대한 주장, 즉 민주주의의 촉진, 공산주의의 확산 방지, 자유 수호, 인명구호, 대량살상무기 제거 등이었다. 진정한 이유들은 다른 곳에 있었다. 지구상의 더욱 더 많은 곳에 미국의 영향력을 심으려는 충동,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자원들을 통제할 필요, 대통령의 정치적 야망, 국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해외에서의 모험으로 돌리는 작전의 유용함과 같은 곳들 말이다(하워드 진, 2008: 162)."

36) 또한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남한사회도 인권을 침해하는 법과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통치에 활용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략적 모색을 해보려고 한다.

1) 질적연구방법의 도입 및 적용 확대

통계적 접근과 탈북자 증언의 해석·분류작업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즉 대상을 객관화하여 분석할 수 없는 다양한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상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느낌, 감정, 직관, 상상력, 믿음, 관념 등을 수치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양적 자료에 근거한 사회과학적 접근이 담아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제기된 것이 질적연구방법이다. 질적연구방법은 다양한 학문적 영역의 내용을 포용할 수 있으며, 학제 간 연구 및 새로운 접근도구들을 제공해준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³⁷⁾

질적연구방법 중에서 최근 북한연구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구술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중요한 연구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겪고 체험했던 기억을 발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다.³⁸⁾ 그러나 구술사연구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구술사연구와 관련, 이희영(2005: 123)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탈북자 인터뷰작업 및 북한 인권실태 파악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37) 질적연구에는 현지조사(fieldwork), 문화기술지(ethnography), 민속학, 민속방법론(ethnomethodology), 구술사, 생애사, 현상학, 텍스트분석, 초점집단연구(focus group interview) 등이 있다. 이런 다양한 질적 연구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경험되고 생성되는가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해석적인 연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복잡적, 다층적으로 구성된 사회의 유의미한 구성요소로 간주된다. 둘째, 이들 질적연구방법들은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자료를 만들고, 자료가 창출되는 사회적 맥락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셋째, 분석과 설명방법에서 복잡성, 세부사항,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풍부하고 상황적이며 세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완숙한 이해를 창출해 내는 데 목적을 둔다. 그래서 피상적인 유형, 추세, 상관관계의 묘사보다는 심층적인 분석과 설명을 더욱 강조한다(윤택립, 2004: 18~19).

38) “기억을 재발굴하는 것은 지배에 의해 거세된 다양한 역사경험과 해석의 자원을 추출하는 것이며, 갈등적 역사해석에 담겨 있는 숨겨진 목소리를 되살리는 작업이기도 하다. 정부의 표준적 담론이 그것을 아무리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려고 해도, 그와 배치되고 대립되는 기억들을 완전히 억압할 수는 없으며, 이런 기억들은 늘 새로운 방식의 이단적 해석들로 분출되어 나온다(백승욱: 2007, 18~20).” 단 기억의 문제에 대한 홉스봄의 비판적 거리두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구술사는 개인적인 기억이고, 개인적 기억은 사실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믿을 수 없는 매개물이다. 요점은 기억이 기록이 아니라 선택적인 심리과정이고 그 선택은 어떤 범위 내에서 조금씩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구술 자료를 검증할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에릭 홉스봄: 2002, 331~332).” 그리고 ‘라쇼몽효과’(Rashomon effect)처럼,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기억조차 양립 불가능할 정도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최호근: 2003, 167~168).

…크게 두 가지의 방법론적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 연구자가 인터뷰를 통해 끌어 올린 구술 자료를 활용할 때 구술내용에 대한 복합적인 해석 작업을 생략하거나 단순화하게 된다. 즉, 구술자가 이야기한 내용 자체를 과거 사실에 대한 재현으로 보고, 특정 부분을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인용함으로써 소위 구술내용에 대한 ‘진실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둘째, 과거에 대한 구술이 지나간 체험을 단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삶의 전개과정에서 쌓이는 체험과 구술 상황에 의해 서사적으로 조직되는 측면을 간과한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구술채록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점에서 준비한 질문을 면접상황에서 한다는 것 이외에는 기존의 설문조사와 별다른 방법론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구술된 인터뷰의 선후관계를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임의로 바꾸거나 구술된 표현을 윤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구술사 연구는 구술된 면접내용이 과거에 대한 증언이라는 특성뿐만 아니라, 과거 사실을 현재의 기억을 통해 서사적으로 구성한다는 특성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심도 있게 성찰할 것이 요구된다.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되는 탈북자 인터뷰와 동시에 생애사방법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생애사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의 정치체제에 의한 인권침해의 구조와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 그리고 주체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를 이해하는 방식 등을 연구함으로써,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실제적 접근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해 생애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어떤 전략적 행위를 전개해 왔는지에 대한 장기적 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정한 개인의 삶의 이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다(이희영, 2005: 130).

그리고 질적연구방법의 하나로서 ‘거시적 현상의 미시적 기초’를 추적하는 ‘미시사’의 적용 가능성 문제이다. 미시사는 “구체적인 개인이란 창을 통해 역사적 리얼리티의 복잡 미묘한 관계망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곽차섭, 2000: 14). 연구자들이 접하는 탈북자와의 1대 1 면담은 특수한 연구자와 특수한 개인이 특수한 얘기를 나누는 공간이다. 탈북자 개인이 북한 인권침해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 삶의 궤적에서 겪은 특수한 경험들의 전개를 구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은 공식적 문건이나 통계가 보여주지 못하는 생생한 경험들을 담고 있는 비가시적 구조들을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위의 책, 53). 특수한 것(탈북자 증언)의 ‘촘촘한 묘사’(C. Geertz,

1973: 3~31; 위의 책, 66에서 재인용)를 통해 미세하고 끝없이 전개되는 전략과 선택들에 의한 변화과정을 읽어내는 것이다.

즉 북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통계학적 접근이 읽어낼 수 없는 관계와 구조를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동의 또는 저항의 과정을 좀 더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포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체제가 발생시키는 인권침해의 비가시적 구조와 이에 대응하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전략과 선택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상사적 접근’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궤적을 복원하는 것이다. 국제인권레짐과 북한과의 관계, 남북관계 속의 북한인권문제 등과 같이 국제정치적 차원, 남북관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연구, 그리고 증언을 통한 인권침해의 통계적 접근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생생한 현실을 재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매일매일,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계속 전유되고, 판독되고,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그럼으로써 ‘현실적’으로 되는 실천”에 대한 면밀한 추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알프 뤼트게, 2002: 331).

포이케르트(Detlev Peukert)는 일상사적 접근을 통해 나치의 일상을 재구성한 바 있다. 그는 일상사적 접근을 통해 나치의 테러가 어떻게 가능했으며, 주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용·저항하였는지, 대중의 불만이 저항운동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나 나치가 주장한 민족공동체에 왜 함몰되지 않았는지, 침묵했던 대중들에게 역사적 책임은 없는 것인지 등에 관한 연구작업이다(포이케르트, 2003: 21~29).

즉 항상 반복되고, 무미건조하며 의미 없이 축적되는 것으로 보이는 일상의 공간에서 오히려 생생하게 벌어지는 삶의 궤적을 복원하는 작업이다.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가 어떻게 일상의 공간에서 작동하며, 일상의 공간에서 주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용·전유·충돌하며, 변화·재구성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일상을 조망함으로써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입체적 접근이 가능하며, 이런 연구 성과들을 통해 진일보된 북한인권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비교연구의 확대

사회주의 국가 또는 독재국가의 이행 및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실태의 변화과정을 북한의 현실과 비교 연구하는 것이다. 북한 사회주의 정치·경제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구 소련의 스탈린모델과 중국의 모택동모델을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북한의 체제 전환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베트남·쿠바의 개혁·개방과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과정을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연구를 북한 인권실태 조사에 적용하는 것이다.³⁹⁾

비교는 “사회현상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understanding)를 추구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의 인과관계 또는 법칙을 찾아내 그 현상을 ‘설명’(explanation)하려는 방법”이다. 즉 사회현상의 생성원리의 법칙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사례분석’(cross-case analysis)을 통해 검증을 전개한다(구갑우, 2003: 283~284). 대상들의 비교를 통해 공통적 요인과 변별적 요인을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법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비교연구는 공통성과 특이성, 보편성과 특수성의 법칙과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연구대상의 작동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교연구에는 함정이 존재한다. 비교의 조건과 범주 등이 불일치할 경우, 부적절한 비교의 틀을 사용할 경우, 연구는 잘못된 결과로 인도될 수 있다. 즉 비교연구가 북한의 인권실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Park sunsong, 2005: 344). 예를 들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독일의 나치수용소(아우슈비츠)를 잘못 비교할 경우 결론은 ‘홀로코스트’(Holocaust)로 도출될 수 있다. 또한 서구적 기준의 인권과 북한의 인권실태를 비교하게 되면, 강제수용 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실태가 더욱 부각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북한 주민들의 광범위한 빈곤과 기아 등 생존권 문제가 간과될 수 있다. 비교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북한 인권실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유의한 사례와 구체적 방법을 획득하기 위함이라는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비교연구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유의미성을 가질 수 있다. 사회주의 시기 각종 법률과 제도가 해당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또는 어떻게 보장했는지의 연구

39)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들의 사회변동과정에 대한 비교연구는 질 예알·이반 젤레니·엘리노어 타운슬리(2007)의 글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다.

를 통해, 북한의 현재 각종 법률과 제도의 인권침해 성격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개혁·개방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주의 이행국가에서 이행기에 법·제도적 변화가 인권과 어떤 관계를 구성했는지, 동일한 방식으로 체제전환기에 어떤 관계를 구성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향후 북한 체제의 변화와 인권실태의 인과관계 연구를 위한 사전 인프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3) 자료 및 정보 수집 인프라의 구축

객관적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위한 정부와 학계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자 집단 내부의 일정한 합의수준을 도출할 수 있는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양적·질적 성장은 시급하다. 이럴 때 북한 인권의 실재적 파악과 공감대의 영역이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우승지, 2006: 206). 또한 이런 객관적 자료의 축적은 정치적 목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 선입관에 의해 북한 인권실태를 왜곡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자 집단의 제어를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객관적 자료와 정보의 수집은 북한의 인권상황에서 원칙상의 권리와 실제상의 권리의 간극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탈북자들의 증언만으로, 연구자들의 다양한 이론적 틀의 도입만으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 자료 수집과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학계의 건설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매개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은 정보기관들의 정보제공 거부, 정부 관료들의 ‘정보이기주의’, 연구자들의 ‘한탕주의’ 등에 의해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이 난관은 필히 극복해야 한다.

북한 인권실태에 접근하기 위한 조사방법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기존 연구 성과들이 북한 인권실태의 실체적 접근에 근접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황이며, 새로운 조사방법을 발굴하기 위한 상황은 제약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론적 접근보다는 정책적 접근이 다수를 이루는 것도 현실이다. 북한 인권실태 조사에 있어 연구

40) 직접적인 인권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으나,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도 유의미한 자료라 할 수 있다(신종대·최은석, 2008).

자들은 ‘우공이산(愚公移山)’과 ‘실사구시(實事求是)’라는 화두를 항상 머리에 담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1. 국내자료

- 곽차섭(2000). 『미시사란 무엇인가: 역사학의 새로운 가능성-미시사의 이론·방법·논쟁』. 서울: 푸른역사.
- 구갑우(2003). “북한연구와 비교사회주의 방법론.”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올아카데미.
- 김수암(2001). “국제사회의 인권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통일정책연구』, 10권 2호.
- _____ (2005).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공론화와 북한의 대응전략.” 『통일정책연구』, 14권 1호.
- (2008). “유엔인권레짐과 북한인권.”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1호.
- 김종욱(2006). “북한의 관료체제와 지배구조의 변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 정치학과 박사 학위논문.
- _____ (2008). “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의 변동.”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 뤼트게, 알프(20020). “‘붉은 열정’이 어디 있었던가?: 노동자들의 경험과 독일 파시즘.” 『일상사란 무엇인가』. 서울: 청년사.
- 박구용(2004). “인권의 보편주의적 정당화와 해명.” 『사회와 철학』, 제7호.
- 백승욱(2007). “기억으로 살아나는 현재 속의 과거, 문화대혁명.” 『중국노동자의 기억의 정치』, 서울: 폴리테리아.
- 서보혁(2006). “북한인권연구에서 내재적 시각의 의의와 한계.” 『현대북한연구』, 9권 1호.
- _____ (2007). 『북한의 인권: 이론, 실제, 정책』. 서울: 한올아카데미.
- 서보혁·이유진(2006). “미·북간 인권분쟁의 이념적 기초: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 제2집 1호.
- 셀라스, 커스틴(2003).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서울: 은행나무.
- 신종대·최은석(2008).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서울: 한올아카데미.
- 양천수(2007). “상호합법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북한인권문제.” 『공법학연구』, 제8권 2호.
- 아렌트 한나 지음·김정한 옮김(1999). 『폭력의 세기』. 서울: 이후.
- 에릭 홉스봄 지음, 강성호 옮김(2002). 『역사론』, 서울: 민음사.

- 우승지(2006). “북한인권문제 연구의 쟁점과 과제.” 『국제정치논총』, 3호.
- 윤택림(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최진욱(2008). 『북한인권백서 2008』. 서울: 통일연구원.
- 이우영(1999).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 이원웅(2007). “국제사회 인권압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국제정치논총』, 제47집 1호.
- 이희영(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
- 장명봉(2008). 『2008 최신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 정성장(2004). “미국의 북한인권법.” 『정세와 정책』, 성남: 세종연구소.
- 정태욱(2005).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책임: 협력적 인권 개입을 위해서.” 『영남 법학』, 제11권 제2호.
- _____ (2006). “북한의 법질서와 인권 개념.” 『북한인권법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아감벤, 조르조 지음 · 박진우 옮김(2008). 『호모 사케르: 주권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 조효제(2007). 『인권의 문법』. 서울: 후마니타스.
- 조희연 편(2002).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서울: 함께읽는책.
- 베일리스, 존 · 스미스, 스티브 편저, 하영선 외 옮김(2006).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 지책, 슬라보예(2006). “반인권론.” 『창작과 비평』, 132(여름).
- 진, 하워드 지음 · 문강현중 옮김(2008). 『권력을 이긴 사람들』. 서울: 난장.
- 차문석(2007).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와 인민의 생활.” 『2007 북한인권 토론회: 북한 사회 변화와 주민생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최봉대(2003). “탈북자 면접조사 방법.”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올아카데미.
- 최의철(2002). 『북한인권과 유엔레짐: 시민적 · 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 최호근(2003).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제85집.
- 포이케르트, 데틀레프 지음 · 김학이 옮김(2003). 『나치시대의 일상사: 순응, 저항, 인종주의』. 서울: 개마고원.
- 허만호(2008). ““나선형 5단계론’으로 본 북한의 인권정책: 헬싱키 프로세스의 적용.” 『국방연구』, 51권 1호.
- Park, Sunsong(2005). "Human Right in North Korea and U.S. Policy."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1호.

2. 북한 자료

- 김은경(2005).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것은 어길 수 없는 공민적 의무.” 『정치법률연구』, 제1호.

- 리성국(2006). “사회주의 국가관리에서 행정법적 제재의 필요성.” 『정치법률연구』, 제2호.
- 리원룡(2006). “비인도주의적이고 반인륜적인 미국사형제도에 대한 비판.” 『사회과학원학보』, 제1호.
- 리창세(2006). “공화국형사소송법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법적 무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52권 제2호.
- 최정애(2002). “자본주의를 미화분식하고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책동의 반동성.” 『사회과학원학보』, 제3호(2002).
- 현웅삼(2005).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주요 기능.” 『정치법률연구』, 제4호.

3. 해외자료

- Bentham, Jeremy(1962). "Panopticon, or, the Inspection House." *The Works of Jeremy Bentham*. Vol. 4. New York: Russell & Russell. Reproduced from the Bowring Edition of 1838~1843.
- Brems, Eva(2001). *Human Right: Universality and Diversity*. The Hague: Martinus Nijhoff Publisher.
- Chomsky, Noam(2005). "What we know: On the universals of language and right." *Boston Review*, 30(3-4).
- Geertz, C.(1973). *Thick Description: Toward an Interpretive Theory of Culture*. *Interpretation of Culture*, New York.
- Giddens, Anthony(1987).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Volume Two of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andman, Todd(2004). "Measuring Human Right: Principle, Practice, and Policy," *Human Rights Quarterly*, Vol. 26, No. 4.
- Rawls, John(2001), *The Law of Peoples*.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Risse, Thomas, Stephen Ropp and Kathryn Sikkink(ed.)(1999). *Power of Human Right: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ber, Max(1968).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Bedminster.

4. 기타자료

- (사)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www.goodfriends.or.kr)
 『로동신문』 (2001.3.2/ 2001.3.16/ 2006.2.11)
 『조선신보』 (2004.10.2)



북한의 경제적 분배 구조와 사회권 조사 방법

차 문 석
(통일교육원)

1. 사회권에 관한 일반적 사항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회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사회권은 노동권, 노동조건, 노동조합 가입권, 사회보장권, 가정·산모·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보호권, 생활수준 유지·향상할 권리,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과학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유권’이 국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 등을 요구하는 소극적 권리라고 한다면 사회권은 ‘실질적 평등’과 ‘분배 정의’를 핵심 내용으로 국가에 그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현 시기 북한의 경제적 분배 구조와 이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북한에서의 사회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사회권은 현재 국제사회가 규범화시켜 놓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를 비준한 상태에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국제사회권 규약, 이른바 A규약¹⁾)은 1966년 12월 16일 유엔총회 결의 2200(XXI)으로 채택되었으며, 동 규약 제27조에 따라 1976년 1월 3일 발효되었다. 이 글에서 검토하게 될 북한은 이 국제사회권 규약을 1981년 9월에 비준하였다.²⁾

사회권 규약에 비준한 해당 국가는 5년에 한번씩 관련 조치와 진전사항에 관한 국가 보

1) 국제자유권 규약은 B규약이라 하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다.

2) 한국은 국제사회권 규약에 1990년에 가입했다. 1990년에 첫 번째 정부 보고서를 제출하고 1999년 7월에는 두 번째 정부 보고서를 제출했다. 2001년 4월에 두 번째 정부 보고서에 대한 시민 단체 측의 반박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2001년 5월에는 UN에서 두 번째 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 평가서를 한국 정부에 제시했다.

고서를 UN에 제출해야 한다. UN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를 심의하여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89년 1월 14일에 최초 사회권규약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제2차 보고서는 2002년 4월 9일에 제출하였다. 2차 보고서에서는 사회권 규약의 10개 조항의 이행 경과를 보고했다. 사회권규약위원회는 북한 보고서를 2003년 제44-46회 회의에서 검토하고 같은 해 11월 28일 제56회 회의에서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국제자유권 규약(B규약)은 규약에서 명기하고 있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권 규약은 그렇지 않다.

국제사회권 규약 제2부 제2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다.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 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³⁾

입법 조치를 필요로 하는 자유권과는 달리 사회권은 세계적인 공통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가용한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약이 현실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가용한 자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합의하는 것이 순서상 앞서야 한다. 게다가 특정 국가의 자원이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분배와 우선 순위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권 규약은 경제사정의 변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정책적인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애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UN사회권위원회는 일반 논평 3(당사국 의무의 본질)에서 “각 당사국이 각각의 권리에 대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수단을 결정해야만 하나, 당사국이 선택한 수단의 적절성이 항상 자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국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대한민국국가인원위원회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안내서』 126쪽에서 인용. 강조는 필자.

보고서에 자국의 조치의 내용뿐 아니라 상기 조치가 각각의 상황 하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근거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모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위원회의 몫이다”(4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 시기 북한과 같이 국민 경제의 장기간의 붕괴 상황 하에 있는 국가의 경우, “가용 자원이 극도로 제한되는 시기에 저 비용의 대상특정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의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12조)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국가 내에서 사회권의 보장과 사회권 규약의 실천은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의 논의도 사실상 매우 진지하고 섬세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글이 북한의 사회권을 주제로 삼았으며, 북한이 국제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권 규약을 중심으로 북한의 사회권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 사회권 규약이 규정하는 권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국제 사회권 규약은 다음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권 규약에 명기된 이러한 각종 사회권 권리들이 북한에서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그 실태들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 자결권(제1조)
- 남녀평등 의무(제3조)
- 노동의 권리와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제6조, 제7조)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제8조)
- 사회보장권(제9조)
- 가족, 임신부, 아동의 보호(제10조)
- 적절한 의식주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제11조)
-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유지할 권리(제12조)
- 무상의무 초등교육의 권리(제14조)
-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창작성 그리고 그 저작을 보호함으로써 이익을 향유할 권리(제15조)

2. 북한의 사회권 실태

사회권 측면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⁴⁾와 북한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펴낸 보고서 “북한 식량난과 북한인권”(2004)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사회권이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단체와 사람들은 거의 없다.

현재 북한은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모든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어린이, 여성 등 취약 집단의 건강권과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고, 개인의 경제활동권이 이동의 자유 제한, 개인영농의 권리 제한 등의 측면에서 침해받고 있다. 현 시기 북한의 경제 상황은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필요(basic needs)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의 사회권 실태를 객관화 시킨다는 취지에서, 북한이 가입한 유엔 사회권규약 위원회에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동위원회가 2003년 제44-46회 회의에서 검토하고 같은 해 11월 28일 제56회 회의에서 채택한 최종견해를 살펴본다. 동위원회는 2003년 12월 12일에 24가지의 제안 및 권고사항을 내놓았다.⁵⁾

4) 통일연구원에서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5) 이하는 서보혁, “북한인권”(서울: 한울, 2007)에서 인용

- 규약 이행을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국제원조를 구하는 한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을 포함한 국제적 지역적 기구들의 국제협력활동에 참가할 것
-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보시키는 헌법 및 법률 조항들을 즉각 재검토할 것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
-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할 것
- 여성에 대한 반차별 원칙의 실현을 위해 국내법을 재검토하고 여성의 지위상승 및 권리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
- 생계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외국으로 나간 개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국내법을 재검토할 것
- 독립노조 설립권리, 파업권 등 노동조합의 권리를 규정하는 규약 제8조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재검토할 것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국내법 개정
- 아동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국제 식량원조에 대한 취약집단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식량 프로그램에서 이들에게 우선권을 줄 것 등

하지만, 동 위원회에 북한이 제출했던 보고서와는 달리 북한의 사회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상태였다. 1990년대 식량 및 연료·비료의 최대 공급국이었던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난과 식량난이 악화되어 대기근의 발생하였고, 기아로 인한 사망자 수는 북한 당국의 발표는 22만 명에 달했다. 특히 사망 인구 가운데 60세 이상의 높은 연령층과 영아,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사망률이 높았다.

<북한기근 사망자 수의 추정>

추정기관(개인)	사망자 수
좋은벗들(NGO)	350만 명 이상(1995.8 · 98.7)
황장엽(前조선로동당비서)	250만 명(1999 · 97)
Peter Hayes	20, 30 · 200만 명(1995 · 98)
미국 의회조사단	90 · 240만 명(1995 · 98)
Andrew. S. Natsios	250만 명(1995 · 97)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만 명(1995 · 97)
최수형(북한외무성 부상)	22만 명(1995 · 98)
Goodkind & West	60 · 100만 명(1995 · 2000)
Lee Suk	66.8만 명(1994.1 · 99.8)

출처: 법륜 편(1997:173 · 210), 황장엽(1999:18), Woo Cumings(2002:46), M.Noland(2003:12), 이삼식(2000:62 · 70), 중앙일보(2001.5.16), Goodkind & West(2001:234).

2000년대 들어와 국제사회의 지원 증가 및 곡물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식량 배급 상황이 다소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2008년 현재에도 절대적인 부족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1994/1995 양곡년도 이후 2006/2007년까지 연평균 127 · 250만 톤의 곡물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08년 현재 북한의 식량수급 능력으로는 배급제의 재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7월에 북한 농업성은 2008년 농사실태를 보고하는 회의에서 올해 농사가 풍작이라도 전체 주민의 6개월분의 식량도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가 있다.

또한 2002년 7 · 1 조치 이후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을 (국영) 시장에서 현물로 구매하게 되었는데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하여 일반 주민들의 식량 획득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2008년 현재 식량 부족 현상이 식량 가격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고, 외부의 식량 지원이 줄어들고 지원된 식량이 적절한 배분이 되지 않아 일반 주민들의 기근 상태를 더욱 심각화 되고 있다. 의료 체계와 의료 서비스도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러 각종 질병에 무방비 상태이며, 이에 따라 평균 수명도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

2001년 5월 북경 제5차 아동보호 아태각료급 회의 당시 북한대표 최수현 외무성 부상이

발표한 “90년대 북한의 기근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평균 수명이 93년 73.2세에서 99년에 66.8세로 감소하였고,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 당 27명에서 48명으로 증가했고, 출생률은 2.2%에서 2%로 떨어졌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93년 991달러에서 98년 457달러로 하락했다.⁶⁾

북한의 사회권 실태가 국제사회에서 핫이슈로 부상했는데다가 주민의 식량권과 생존권의 어떤 진전도 이뤄낼 노력을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UN은 1997년, 1998년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이어 2003년 이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06년 11월 17일(한국시간 18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UN 북한인권결의안의 전문 중에서 북한의 사회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인권 특별 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 (b)의 (vi) 북한 공민에 심각한 영양 결핍과 곤란을 겪게 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
- 3. 아동 영양실조의 만연이 상당수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하고 있으며 북한은 국제 구호단체가 계속해서 모든 구호 필요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주재를 허락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왜 이러한 사회권 침해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는가. 사회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으며, 이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에 대한 책임도 북한경제의 폐쇄적 속성에서 찾는 시각과 서방의 경제제재, 사회주의권의 무역의 붕괴 등 외부에서 찾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문제의 발생원인도 그러한 대립 지점이 형성되어 있다.

어쨌든 북한의 경제난이 왜 발생했는가를 떠나서 북한의 경제난이 북한 주민의 인권 침

6) 송경민, “대북 인도적 지원의 쟁점과 과제”, 제30차 북한연구회 세미나 발표논문, 2003년 11월 15일, 4쪽.

해를 발생시켰거나 혹은 더 악화시켰다는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제난 이후 북한의 경제적 분배 구조의 현실과 동학을 설명하고 이로 인한 사회권 침해 실태, 그리고 사회권 실태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3. 북한의 경제적 분배 구조

현 시기 북한의 경제적 분배 기능은 완전히 중지 상태에 있다. 주지하듯이 이는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시기의 혹독한 경제난, 에너지난, 식량난에 기인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회권이라 불리는 식량권, 건강권, 노동권, 여성권, 아동권, 교육권 등의 제반 권리는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식량권 및 생존권과 관련하여 북한은 1990년 초까지 월 2회 식량배급표(15일분)에 명시된 기준량이 4인 가족 10kg에서 1995년에는 배급표의 기준량에 상관없이 월3~5kg만 공급할 정도로 식량배급이 악화되었다. 1995-9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식량 배급이 중단됨에 따라 식량을 개인이 자체 해결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하게 되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경제는 세 개의 경제 영역(국민경제, 수령경제⁷⁾, 시장경제)으로 나뉘어 졌으며 그 분배 구조 또한 해당 영역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비록 학술적으로 합의가 도출된 분류 방식은 아니지만, 현 시기 북한의 경제적 분배 구조를 독자들이 보다 시각적이고 도식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7) '수령' 경제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용어도 아니며, 국민경제, 인민경제 등과 구분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제를 지닌 경제영역 혹은 공간도 아니다. 하지만 적절한 명칭을 북한 내에서 찾을 수 없는데다, 이미 한국에서 일부 연구자들(홍민, 2006; 김광진, 2008)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북한 경제의 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차용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북한의 경제적 분배 구조의 세 경제 영역>

영역	내용	비고
국민 경제	기존의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국가의 공식 경제	내각이 중심 1990년대 이후 심각한 파행 상황
수령 경제	당 경제와 군 경제를 총합적으로 칭하는 경제	관료집단의 지배를 관리하고 국민경제의 문제를 돌파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수령 통치자금이 기본
시장 경제	국민경제의 파산으로 인하여 사회가 생존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수립한 경제 영역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등장하여 전국적 네트워크

먼저 국민 경제 영역이다. 국민 경제는 그것이 파산되었든 아니든 간에 일반 국가들의 국민 경제를 들여다 볼 때의 영역들을 말하는데, 북한에서는 기존의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국가의 공식경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이 영역은 공식적으로는 내각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경제 영역은 사실상 1990년대 중반 이후 파산되었다. 국민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현재 북한의 경제는 ‘척추 없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 경제로부터 일정정도 자율적인 경제 영역이 독립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했다. 국민 경제를 정상화시키기를 포기한 ‘당-군 경제’(이하 수령경제)가 현재 북한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수령’ 경제는 국민 경제와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통치 차원의 경제 영역이다. 이른바 당과 군이 운용하는 경제를 총합적으로 지칭하는 경제이며, 관료집단의 ‘충성’을 관리하고 각종 경제 문제를 돌파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수령 통치자금이 기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 경제는 국민 경제의 파산으로 인해 사회가 생존의 차원에서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경제 영역이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 세 가지 경제 영역은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첩되면서도 폐쇄적이다.

1) 국민 경제 영역과 경제적 분배 구조

북한에서 아직까지는 공식 경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국민 경제 영역이 어느 정도 북한 전체에 영향력을 가지고 체제를 부양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운용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는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가가 경제 전반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수입(세입)을 어떻게 확보해 낼 것인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본다. 북한은 현재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 이러한 재정 문제는 현재의 북한 체제 하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지난 2000년 이후 북한의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에 204억 원, 2001년 216억 원이었으며 이후로는 자세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05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는데, 이로써 2005년 전후의 예산 규모의 증감 수준만을 알아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최근의 예산 규모를 계산해 보면, 2004년도 예산은 3,513억 원, 2005년 예산은 3,885억 9천만 원, 2006년 예산은 4,197억 원이었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의 각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11기 5차 회의와 6차 회의에서 2007년과 2008년도 예산은 4,332억 원과 4,513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매년 점차적으로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정 수지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2008년 북한의 예산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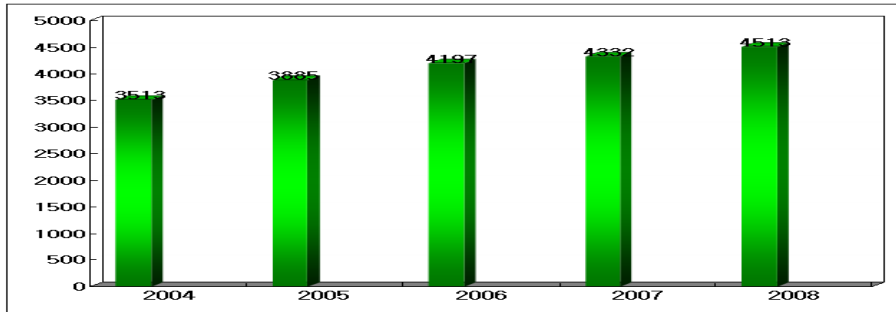
(단위: 억(북한 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예산 규모	3,513	3,885	4,197	4,332	4,513

자료: 한국은행; KIEP; 통일부; 통일연구원

북한의 예산 규모 추이

(단위: 억(북한 원))



한편, 북한의 재정 수지 적자를 보면 북한의 공식적인 경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재정 수지는 지난 2004~07년 동안에 2005년에 140억 4455만 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7년에 67억 1737만 원으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정 규모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게 된다.

2004-2007년 북한의 재정 수지 적자 규모

(단위: 북한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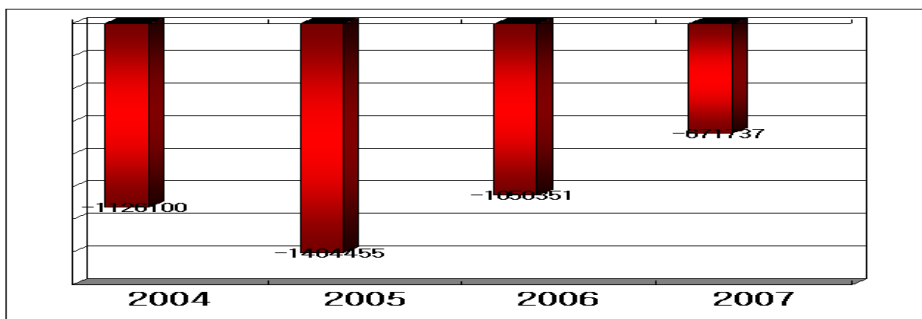
연도	2004	2005	2006	2007
예산 규모	-1,126,100	-1,404,455	-1,050,351	-671,737

자료: 통일연구원(2008)

주: 각년도의 결산 내용을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 재정 수지를 계산한 것임.

2004-2007년 북한의 재정 수지 적자 상황

(단위: 북한 만 원)



이렇듯 장기적으로 심각한 재정난이 존재하면서도 매년 국가 예산은 부문별로 확정되어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세입 구조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은 채로 형성되어 불안정한데다가, 그나마 예산 집행의 결과는 매년 심각한 재정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계획적이고 공식적인 국민 경제 영역은 현 시기 북한의 경제적 분배 구조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권의 보장은커녕 북한 체제 자체의 항구적인 경제적 위기만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생존차원에서 경제적 분배 구조를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구축하였다. 그것이 바로 시장적 기제인데, 현재 사회권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분배의 실질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2) 수령 경제 영역과 경제적 분배 구조

국민 경제가 나름대로 일정정도 수준에서 작동하던 90년대 이전까지는 묻혀서 운용되던 것(胚胎)이, 국민 경제로부터 일정정도 자율적인 경제 영역으로서 독립적으로 운용(脫배태)되기 시작했다.

혹독한 경제난으로 견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국민경제를 정상화시키기를 포기한 ‘당-군 경제’(이하 수령경제)가 현재 북한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수령’ 경제는 국민 경제와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통치 차원의 경제 영역이다. 이른바 당과 군이 운용하는 경제를 총합적으로 지칭하는 경제이며, 관료집단의 ‘충성’을 관리하고 각종 경제 문제를 돌파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수령 통치자금이 기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령 경제의 경제 조직

영역	조 직
당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재정경리부 • 중앙당 38호실 및 산하 공장, 농장·목장, 수산사업소, 무역회사, 무역은행 등 • 당 중앙위원회 39호실
군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군수공업부 제2경제위원회 • 인민무력부 산하 공장, 농장·목장, 수산사업소, 무역회사, 무역은행 등

현재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인 당과 군에 별도의 경제조직을 구축하여 독립적인 생산 활동에서부터 금융과 무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의 경제 행위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신과 권력 엘리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령 경제의 자금 용도는 국민 경제의 정상화가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권력 유지를 위한 통치자금을 확보하고 권력엘리트의 충성과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권력 엘리트들에게는 하부 조직 관리를 위한 물질적 기반으로 사용된다.⁸⁾

수령 경제의 통치자금은 경제적 측면에서 국내 생산 자원의 독점적 점유와 외화벌이를 통해서 마련된다. 이 자금은 정치적으로 체제 안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수 특권화된 관료들의 충성과 지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고 중하위 관리들에게 하사는 ‘선물’ 경비, 현지도도 이후 생산단위에 투여되는 ‘주석펀드’의 자금으로 사용된다.⁹⁾

현 시기 북한의 수령경제는 국민 경제의 복구와 정상화와는 전혀 무관하며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당과 군이 운영하고 통제하는 기관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관들의 유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권력 엘리트가 추구하는 이해 관계(현행 체제의 유지와 재생산)에만 결부되어 있다.

수령 경제는 국민 경제의 붕괴 이후 아래로부터 생존적인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구축되어 온 시장경제와 공식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또한 현실적으로는 공생 관계에 있다. 북한 경제의 실태를 규정하고 있는 구조를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북한 주민들과 사회가 자생적으로 구축해 온 시장경제에 수령 경제가 일정 정도 기생하는 체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대단위 공장 및 광산을 점유하고 활용하는 공식적인 채널로 가동되기도 하지만 시장적 기제로도 연결되어 있다. 외화상점의 운영, 화물 수송, 호텔 및 여관 운영, 도소매 상

8) 동아일보, 2008.09.17;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2006년), 293쪽.

9)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2006년), 293쪽.

업 등을 포함해서 가짜 물품(특히 담배)의 생산 및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기존에 들어선 시장적 질서에 편승해서 운용되고 있다. 특히 수령 경제에서는 권력 엘리트들이 주요한 행위자로 활동하는 경제 영역이기 때문에 공식 영역과 불법 영역을 넘나들면서 북한 경제 구조 자체를 형해화(形骸化)하고 있다. 따라서 수령 경제 영역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북한의 경제적 분배 구조를 구조적으로 볼 수가 없게 된다.

3) 시장 경제 영역의 분배 구조

북한에서 형성된 시장 경제 영역은 국가의 도움 없이 ‘자력갱생’으로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된 경제 영역이다. 국가가 아무런 보장과 자원을 제공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전개된 시장경제이기 때문이다.¹⁰⁾ 고난의 행군 시기의 혹독한 경제난과 대기근으로 인해 국민경제가 붕괴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은 그야말로 자력갱생의 원칙으로 생존을 구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장은 가동을 멈추었고, 농지는 피폐화되면서 더 이상 공식적인 계획경제에서 생존을 탐색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북한에서 전혀 새로운 경제 영역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아래로부터의 자생적인 시장화, 완곡하게 표현하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시장경제가 등장하였다. 2008년 현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작동하고 있는 시장경제는 항상적으로 권력 집단과 마찰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시장적 기제와 공간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현재 북한 인민들의 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적으며, 장사 소득은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 경제 영역에서의 시장 행위(상 행위)를 통해서 대부분 생활을 해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 인민들의 식량 확보 방식도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자력으로 확보하거나, 밀수 등 기타 방법으로 확보하는 등 국가의 도움이 없이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¹¹⁾ 그야말로 자력갱생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현 시기 북한의 경제적 분배 구조의 현실이다.

10) 양문수, “북한의 종합시장: 운영실태, 파급효과, 성격과 의미”;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참조할 것.

11) 이영훈,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7년 1월)

200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국가는 ‘경제 문제를 푸는데 국가적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만, 1월 2일 『로동신문』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자력갱생의 구호를 더 높이 들어야 할 때임—인민 자신의 생존은 자신이 책임지는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결국, 북한 인민들이 끊임없이 생존을 구가하고 있는 생존의 터전인 현시기 북한 시장의 분주하고 활발한 모습은 북한 경제 그 자체를 시각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가 시장경제로 전화하게 된 것은 국가의 정책이나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실패 때문이었다. 현재, 인민들은 시장에 모든 것들을 내맡겼으며, 국가가 의도하고 유도해도 계획경제(가능할 것 같지도 않다)로 다시 복귀하지 않을 정도로 굳건히 북한 경제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¹²⁾ 어찌 보면 북한의 시장경제 영역은 자신의 인민들을 획득했으며, 국가와 다른 전망을 가진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북한 인민은 사회권을 스스로 보장하고 자신에 안주해야 하는 환경에서 장시간 생존하고 있다.

4) 북한 경제 영역과 경제적 분배구조

북한에서 국민 경제의 형해화와 이에 따른 국가 지도부의 국민 경제 포기, 그리고 마치 난파가 인접한 선박에서 보물 상자를 거머쥐고 탈출을 시도하듯 국가 지도부는 수령 경제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면서 오로지 체제 수호와 재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사회권을 영유해야 하는 주체가 국민임과 마찬가지로 사회권을 보장하는 주체로서 국가를 상정한다면, 현 시기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가 오히려 사회권 보호에 능동적으로 나서기를 현 시대는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국가 지도부는 90년대 이후의 경제난을 극복할 의지와 능력을 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사회권이 최악의 상황에 도래하는 것을 방관하였다. 국가적인 차원의 소비재 배급과 식량 분배는 중지하였고, 2002년 7.1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 조치 등을 통해서 시장 경제 영역에서의 경제적 분배를 용인하였다.

12) 좋은벗들, 2006년 12월 6일. 공장 및 기업소의 노동자들 또한 생존의 차원에서 행동하고 있다. 개인이 투자한 기업소에 취업하려는 경향이 높다. 국영기업 노동자 임금이 보통 2,000~3,000원이라면, 개입 기업소에서는 20,000~50,000원까지 지불하는 곳들이 많다고 한다.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명목으로 개인 기업소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개인 기업이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7.1조치는 일반적으로 개혁조치였다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북한 인민들에 대한 ‘사회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회권의 완전한 포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국제 사회는 현재 인민들에 대한 ‘사회권 보장’ 대신에 체제 수호를 명목으로 하는 미사일과 핵무기에 집중하는 북한 국가의 무관심과 무능력에 실망스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는 방치된 인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 또한 그 효과에 의혹을 품게 되었다. 캐럴 랭카스터 조지타운대 교수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한문제 국제 심포지엄에서 “대북 원조가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인지 북한 정권의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조기관과 지원국들에게 도덕적인 고민을 안겨준다”.¹³⁾ 고 언급한 바가 있다.

4. 사회권 조사 방법

1) 북한 인권을 둘러싼 논의의 현주소

북한에서의 자유권 및 사회권을 포함한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의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현재에 그러하다. 물론 현재로서는 북한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사실에는 커다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북한체제의 비인도성에 대한 주장과 증거들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다는 주장이 간헐적이거나 나오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근거 없는 대북 비난은 남북화해 분위기를 훼손할 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각종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들의 신빙성과 균형성에 문제제기가 되기도 한다. 탈북자 문제, 외국인 납치,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의 핫이슈를 전면에 배치,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을 동원 북한 인권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주관적 판단에 의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비판도 있다.¹⁴⁾

13) 조선일보, 2004년 2월 16일.

14) 류은숙, “인권 제국주의와 북한인권”, 북한인권토론회, 2005년 3월 23일.

현 시기 북한 인권 문제는 관찰자 혹은 연구자의 북한 체제, 북한 정권의 성격에 대한 판단에 그 시각이 결정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¹⁵⁾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국내외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는 이렇듯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준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 과거의 사례를 기계적으로 반복하거나 미확인 보도들을 과장하여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태도는 극복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편향 속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과장하거나 축소, 은폐시키는 행위에 대해 연구자들은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정보, 북한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이고 부정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곧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탈북자들로부터 일관되게 나오는 진술들은 북한 인권상황의 후진성을 잘 응변해 주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북한 체제의 폐쇄적이고 낙후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다.

2) 사회권 조사 방법

2000년대에 들어와 북한 인권문제가 북한 문제의 주요한 한 축으로 자리하면서 북한 인권 연구는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를 질적 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흥적으로 대응논리를 제시하는 형태의 연구에서 벗어나 보다 심도 있게 북한 인권 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분석하는 저술이 필요한 시점이다.¹⁶⁾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이 중요하다. 이것은 북한 체제의 폐쇄성이라는 특성상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으며 향후에도 그럴

15) 서보혁, 앞의 책.

16) 우승지, 앞의 논문, 206쪽.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자유권(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실태 조사에 비하면 사회권 실태 조사는 직접적 접근 채널과 우회적 접근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자유권 실태 조사와 그것의 해결 과정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체제적인 문제로 쉽사리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회권 실태 조사와 그 해결과정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사회권 실태를 조사하는데 난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북한 자체의 사회권 및 인권 개념의 규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국제 사회권 규약 자체의 모호성(특히, **점진적으로 달성**이라는 규정과,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으로 인해 북한 사회권 실태에 대한 조사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사회권 실태 조사가 가진 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실태에 접근할 수 있다. 대체로 지금까지 북한 사회권 실태를 조사해 왔던 방법이다.

<탈북자 면담>

- 무엇보다도 가장 폭넓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다. bias가 많기는 하겠지만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통한 실태조사가 아직은 중요한 자료일 수밖에 없다.
- 북한에서의 다양한 계층에서의 다양한 삶을 살아온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의 사회권 실태를 다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겠다. 이에는 반드시 사실(facts) 확인을 위해서 교차 확인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탈북자 자신의 주관성을 객관적인 사실에 종속시킬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탈북자 면담은 국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거시적이고도 민주적인 방식 하에서 통제할 수 있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외국의 국가와 국제기구들)와 협력 하에 다양한 방식으로 교차 확인함으로써 북한의 사회권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디자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 기구들과의 정보 교환>

- 현재 북한은 인권에 관한 한 심지어 유엔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나 인물의 방북을 허락하지 않는다. 비록 북한이 국제 사회권 규약, 국제 자유권 규약, 아동권리 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4개의 국제 인권 레짐에 참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실태 조사는 허락하지 않고 있다.
- 하지만 세계식량계획(WFP) 등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국제 기구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 기구들은 항상적으로 북한 내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북한의 사회권 실태에 대한 정보를 밖으로 내오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한 북한 사회권 실태에 관한 DB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획하는 것이 좋다.
- 물론 이들 국제 기구들은 자신의 본래적인 활동 목적에 따라 유리하게 북한의 사회권 실태를 증언(예를 들면, WFP의 경우, 자신의 활동 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주관적으로 표출할 수도 있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교차 확인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UN사회권위원회 제출 보고서>

- 북한은 국제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므로 5년마다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정부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은 국제적 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당사국내 정책수립 및 이행을 목적으로 국내 인권 보호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 보고서를 통한 사회권 실태 조사는 1) 국제인권 조약과 국내법 및 국내정책간의 조화를 위해 취해진 국가의 조치들에 대한 포괄적 검토, 2) 인권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모니터링, 3) 국제인권조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문제점과 불충분한 점에 대한 확인 등¹⁷⁾을 확인할 수 있다.
-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 또한 자의적으로 인권침해 상황을 은폐하고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실태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사(국제 사회권 규약의 경우, 18명의 위원들이 심사)

17) 유엔인권조약제도

한 뒤, 사회권 위원회에서 북한에 권고사항을 제기한다. 이 경우, 대단히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고 실사 수준(물론, 북한의 경우, 실사는 한계를 갖는다)을 거치기 때문에 권고사항 자체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띠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공식 외교관계를 가진 국가들과의 북한인권 협력 체제 개발>

- 영국, 독일, 스웨덴, 그리고 EU 등은 북한에 주재하는 대사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의 식량 상황에 대해서도 이들 주북(駐北) 대사들이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실태를 언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북한에 대사 및 영사를 파견하여 북한과 외교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한 인권 협력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통계적 기법의 활용>

- 북한의 사회권 실태는 식량권, 생존권 등 어느 정도 통계적 수치화를 통해서 그 실태를 분석해 낼 수 있는 권리들도 존재한다. 가령, 식량생산 통계와 식량필요량 통계를 통해서 식량부족량의 통계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북한은 해마다 4월 경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의 결산과 해당년도의 예산을 확정하고 발표한다. 이를 통하면 국방예산과 비교한 인민경제부문의 예산, 문화부문의 예산 등도 적절한 변수 조작을 통해서 DB화 할 수 있다.
- 북한의 공식문헌에 언급되는 통계와 북한 내 책임 있는 인사들의 발언에서 나오는 통계도 중요한 자료로 DB화할 수 있다. 가령, 아사자의 수치에 대한 발언이나 2008년 농업작황에 대한 발언 등이 비록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통계치로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자 및 관찰자들의 객관적 태도의 유지와 객관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았다. 직접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운 북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방법 또한 매우 어렵고 지난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과제는 더 어려운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북한 사회권 실태조사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북한의 사회권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적 프로그램의 구축과 정책 개발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전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입안과 정책실행에 앞서서, 북한 사회권에 대한 가용한 모든 방법을 통한 객관적 실태가 특정시기에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제정세의 유동성과 국제무대의 행위자로서의 개별 국가의 정치적 전략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전제이다. **둘째**, 북한 주민의 사회권 침해 현상의 궁극적으로 북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사실과 해당 국가내의 사회권 침해를 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주체 또한 북한 정부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북한 정부가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셋째**,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비관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역으로 해당 시기의 목표에 대한 수정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의 사항은 이 글의 주제인 사회권 조사방법을 벗어나는 언급이다.

만약 위에서 언급했던 전제들이 수용된 이후에 가장 바람직한 실천들로 판단되는 몇 가지 편린들(정합적이지 못하고 아이디어 차원)을 기술한다.

- 특히 북한의 사회권 침해 실태는 경제난에 의한 측면이 자유권 침해 실태보다 크다고 할 때,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개발 원조와 북한 인권 개선을 연계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의 ‘발전권’¹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¹⁹⁾

18) ‘발전권’은 제3세계 국가들의 국제무대 진출과 비동맹운동의 발달을 배경으로 하는데, 1986년에 발전권이 유엔에서 선언되었다.

19)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20세기 이후 대규모 기아는 독재국가에서만 발생했으며 이는 독재정부 아래에서 생산과 분배의 비효율성, 국민적 요구에 대한 비탄력성, 소수에 의한 독단적 결정, 정권의 안보를 국민의 생존보다 우선시하는 사고체계 등이 식량 부족 문제를 기아상태로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아미티아 센, 박우희 역, 『자유로서의 발전』(경기: 세종연구원, 2001). 또한 시민적 권리의 박탈이 경제적 권리의 박탈로 연결되는 역사적 경험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선경제권 보장, 후자유권 확보 논리는 빈곤과 속박의 악순환을 재생산할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우승지, 앞의 글, 196쪽).

- 북한 주민들의 식량을 포함한 사회권 회복과 신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이 이에 필요한 내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제사회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이금순, 2008).
-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의 노력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이 수용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북한과 국제인권기구의 기술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자유권 규약 이행에는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지만, 사회권을 생존권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운용의 묘미에 따라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한다.
-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문제이다.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그것을 곧바로 요구하는 것 보다는 국내적으로 인권친화적인 법·제도를 만들어 비인권적 의식과 관행을 철폐하고 국가정책과 사회생활 전반을 인권 옹호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연구방법론에 대한 모색

이 희 영
(대구대 사회학)

4

발 제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연구방법론에 대한 모색

- 탈북 여성의 생애체험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이 희 영 (대구대 사회학)

1. 문제제기

이 글에서는 북한 사회구성원-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¹⁾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1990년대 중반의 식량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사회의 여성과 아동이 보다 열악한 삶의 조건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권(인간으로서의 권리)’마저 훼손되고 있다는 조사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결과는 북한사회에 대한 직접연구가 불가능하고, ‘인권’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본격적인 조사연구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북한 사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최근 북한 사회를 ‘탈출’한 사람들의 인터뷰 자료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할 때 생기는 문제이다. 또한 ‘인권’이 갖는 보편성과 함께 ‘북한 사회의 인권’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²⁾ 현실을 조사, 분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북한 여성의 인권상황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다음으로 이를 통해 제기되는 방법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방법론의 이론적 원리를 소개하고, 이러한 접근 방법이 북한의 여성권 연구에서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의 인권에 대한 연구와 여성권 및 아동권에 대한 연구방법 사이에 질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지면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논의 대상을 여성권으로 하고, 여성권에 대한 기존연구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론할 것이다.

2) 사회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근대 사회의 인권이 갖는 다면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조효제, 2007).

2. 북한 여성권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방법론적 과제

1980년대 말 동유럽이 붕괴한 후 부다페스트에서 서독으로 향하는 길에는 수년에 걸쳐 노소(老小)를 구분할 수 없는 여성들이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 ‘몸’이라도 팔아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여성들이었다. 2003년 런던의 테이트갤러리에서 열린 한 사진전³⁾에는 구 소련 지역의 <중년부부>가 등장한다. 1990년대 초, 시골스러운 한적한 길거리에서 남편으로 짐작되는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먼 산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있는, 부인인 것으로 짐작되는 여인은 치마를 반쯤 걷어 올려 아랫도리를 보이고 있다. 필자를 놀라게 한 것은 이들의 무심한 표정이었다. 카메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⁴⁾ 사진 속에 드러나는 그들의 무표정은 생존 앞에서 성적 수치 따위는 사치임을 항변하는 것일까. 이와 유사하게 1990년대 말 북한의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들⁵⁾은 “차라리 팔 수 있는 몸이 있는 것이 다행스러운” 현실⁶⁾을 부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쟁, 지역분쟁, 사회갈등, 체제위기 등의 급격한 사회변동의 시기에 사회의 소수자 집단⁷⁾은 상대적으로 쉽게 권리의 박탈을 체험하게 된다⁸⁾. 지금까지 이루어진 북한의 식량위기에 관한 여러 연구 자료들은 북한사회 구성원의 식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도덕과 윤리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살기 위한 선택이 최선으로 여겨지는 행위원리가 일상에서 관철됨으로써 사회적 위계의 아래쪽에 위치한 여성, 아동 등의 사회집단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권리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여성의 삶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공통점을

3) Weski Dexter, Emma; Weski, Thomas. 2003. *Cruel and Tender: The Real in the 20th Century Photograph*. London: Tate Bunn.

4) 사진을 찍기 위해 작가는 이들과 흥정했는지도 모른다.

5) 이와 관련된 자료는 크게 (사)좋은벗들(1999), 김인성(2005)와 같이 탈북주민들의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와 이영심(2006) 등의 당사자가 쓴 수기류, 최진이(2005)와 같은 자전적 소설, 그리고 이에 기초한 학술논문(백영옥, 2002; 이미경, 2006; 임순희, 2005) 등으로 나눌 수 있다.

6) 오랫동안 (사)좋은벗들에서 북한이주민을 위해 활동해 온 한 실무자의 인터뷰(2006) 내용을 참조하였다.

7) 소수자는 집단의 규모나 숫자로 정의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권력’과의 관계로 이해된다. 또한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소수성’은 새롭게 구성되는 개념이다(박경태, 2008: 12-64).

8) 대표적으로 1990년대에 발생한 각종 전쟁과 종교 및 인종 분규의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인권 침해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다음 사례를 들 수 있다(Medica Mondiale e.V.; Marlies W. Froese; Ina Volpp-Teuscher(eds.), 1999).

방법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북한의 법조항 및 북한에서 발간하는 문헌자료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⁹⁾. 또한 1990년대 말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탈북 현황에 대한 조사’는 북한의 국경을 넘는 개인들의 수, 성별구성, 지역분포 등과 같이 통계에 의해 그려볼 수 있는 경향성을 기술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법제도와 북한 정부가 발간한 자료에 근거한 추론의 한계에 머물고 있다¹⁰⁾. 후자의 연구 중 중국 국경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생활 상태를 보고한 초기의 조사연구(좋은벗들, 1999)는 특히 매매혼과 강제성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여성들의 ‘비(非)인간적 상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후 이어지는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들은 통계자료에 의한 단순 기술을 넘어 그 자료들이 함의하는 의미(meaning)를 읽어내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탈북이주민에 대한 연구가 북한사회구성원이라는 모집단에 대해 표본 집단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소위 대표성과 일반성의 문제)는 양적연구 내에서의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탈북 이주민을 통해서도 북한 사회 내의 인권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¹¹⁾. 연구대상 자체의 결정적 한계가 아니라 그로부터 어떤 연구로 나아가는 가가 문제이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연구는 개별 사실에 대한 법조항이나 양적통계에 기초하여 현실의 단편적 재현에 머무름으로써 인권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재구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인권은 제도나 사건으로 축소될 수 없다. 삶의 일상에서 구조화된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기존의 양적 연구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양적자료의 한계를 넘어서 북한주민들의 삶에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탈북이주민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은 “사실 관계의 신빙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접하게 된다(김근식, 2002: 73). 이는 질적 자료에 대한 다면적 분석과 재구성 과정 없이 단순 인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텍스트의 사실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예를 들어 (사)좋은벗들이 2007년 11월 발간한 <2006~2007년 북한 사회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는 다

9) 예를 들어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서보혁, 2007). 통일연구원(2008)의 보고서는 제도 및 문헌분석과 함께 질적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0) 국가(state)가 생산한 자료가 갖는 한계를 인권연구의 방법론의 측면에서 논의한 다음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조효제, 2007: 263-275). 이 글에서는 각종 양적자료가 갖는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면서(sensitivity), 동시에 깊이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11) 예를 들어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지위변화를 고찰한 연구(이미경, 2006)를 들 수 있다.

른 어떤 연구도 접근할 수 없는 1차 자료에 근거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접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보고서는 주요 문헌자료 혹은 구술자료의 맥락(context)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인용함으로써 ‘~카드라 식’의 주장을 넘어서지 못하거나, 혹은 사실의 재구성(reconstruction)이 아니라, 저자의 주장을 방증하기 위한 증거로만 활용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여기에는 자료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가 숨어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조사된 각종 일차자료를 대하는 연구자의 기계적 관점과 태도이다. 예컨대 인터뷰 당시 구술자의 사회적 위치와 경험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은 구술자 보호를 위한 배려 속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인용된 텍스트가 전체 구술 텍스트에 대하여 갖는 연관성을 언급함으로써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 또한 자료를 대하는 연구자의 기본태도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질적 자료가 갖는 특성¹²⁾에 대한 이해 없이 이를 조사하고 다루는 연구자들의 ‘기계적 관점’이 초래하는 문제이다.

셋째, 이와 같은 질적 자료에 기초한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아주 중요하게) 지적되는 문제는 연구자의 선입관에 의한 자료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김근식, 2002: 74)이다. 나아가 잘못된 해석에 의해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자가 자료를 대하는 자신의 관점(frame)을 성찰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1960년대 인문사회과학의 실증주의 논쟁은 연구자 또한 자신이 연구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이를 중요한 연구의 원리로 실천하는 현장연구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2002년 군산의 성매매 집결지 화재현장에 발견된 ‘종이로 접은 학이 든 유리병’에 대한 해석이 좋은 사례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감금상태로 강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이 가졌던 ‘자유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의 상황에 익숙한 현장 활동가들은 이 종이학이 단골 성구매 남성들에게 제공되던 대표적인 ‘선물’이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질적 자료를 대하는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과정에서 전혀 반성되지 않는 경향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연구 또한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이를 고려한 연구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북한 여성의 삶에 대한 한 연구(임순희, 2005)는 최근 북한사회에서 늘

12) 대표적인 특징으로 모든 (광의의) 텍스트(구술자료 및 기타 문헌자료)는 과거 체험에 대한 사실성을 지시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사후적 재해석을 동시에 내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희영, 2005).

어나고 있는 ‘성매매 현상’을 “생계유지형 성매매와 일신의 안락을 위한 성매매”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분법적 도식¹³⁾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논문에는 이와 같은 타자의 분석도식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맥락과 ‘두꺼운 기술(thick description)’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과 아동의 생존권 보장에 대하여 회의하고 있는 현재 북한사회의 형편에서 ‘생계유지형 성매매’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일신의 안락을 위한 성매매’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넷째,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차원에서 인권 연구자의 해석의 자원이 갖는 편파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¹⁴⁾. 예를 들어 서구사회의 문제를 평가하는 기준과 북한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소위 ‘이중잣대’의 문제가 있다(김근식, 2002: 74). 북한의 여성권에 대한 연구에서(임순희, 2005) “학교에서의 성교육도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언급은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읽혀진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생물수업의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성교육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면 원자료에 대한 제시도 없이 등장하는 위의 언급은 다분히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또한 “북한 주민의 처지와 시각으로, 북한 주민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이해(노옥재, 2003)라는 측면에서 ‘자의적 비판’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이와 달리 북한주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개인 혹은 조직들이 외부에서 지원된 식량이 ‘투명하게 분배’될 것을 요구해야 하지만, 북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전국 곳곳으로 이동수단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앞의 글)은 경청할 가치를 갖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 여성권에 대한 기존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특정한 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개인의 ‘인권’은 법제도나 계량화된 수치로 환원될 수 없다. 기존의 실증주의적 연구 전통에서 수행된 소위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는 북한 사회구성원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

13) 필자는 한국사회의 성매매를 이와 같은 이분법으로 분석하는 관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이와 같은 구분은 조사한 일차자료를 분석하고 재구성 결과라기보다는 연구자가 외부에서 편의적으로 분류한 도식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유사한 경우로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된 성매매의 구분이다. 특히 한국의 성매매 현실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양자가 현실 속에서 구분할 수 없는 복합적인 생애과정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4) 이 문제는 세 번째 지적한 해석의 문제에 속한다. 다만 인권문제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따로 분류하였다.

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인권’의 문제는 기술통계의 수준에서 그려내는 조사연구의 반복이 갖는 한계를 넘어설 때 ‘이해’ 가능하다. 인권의 문제는 법조항 혹은 ‘사건(happening)’으로 축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구술자료 등을 활용한 북한 인권에 대한 연구는 질적 연구의 이론적 패러다임이 쌓아온 성과를 전유하고, 이를 현장연구에서 실천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 현실(social reality)과 연구자 사이의 관계 및 텍스트 분석과 해석의 방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셋째, 인권연구가 기존 인문사회과학 내에서의 연구 성과를 간(間) 학문적(interdisciplinary) 관점에서 전유함으로써 연구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여성권’이라는 문제는 북한연구라고 하는 지역연구의 울타리를 넘어서 젠더연구의 풍부한 성과와 인권문제의 특성을 아우르는 관점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다음에서는 북한의 여성권에 관한 질적 연구방법론의 함의를 토론한다.

3. 질적연구 방법론¹⁵⁾의 원리와 여성 인권 연구에서 갖는 함의

이 장에서는 먼저 질적 연구방법론의 공통적인 원리를 요약한다. 이에 기초하여 질적연구방법론이 북한 여성의 인권연구에서 갖는 함의를 살펴본다.

1) 질적 연구방법론의 원리

(1) 행위자의 일상체험에 다가가는 조사연구: 유도된 질문에서 서사적 인터뷰로

일상세계(everyday world)는 연구자의 개념과 이론에 의해 추상화되기 전(前)의 세계이다. 사회, 정치적 제도(institution)로 환원되지 않는 일상생활을 포괄한다. 질적 연구는 제도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개인의 행위와 행위의 구성물에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상생활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기 위한 연구방법(methode) 방법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성별, 임금, 지역, 정치의식, 소비수준, 문화성향 등 연구자에 의해 사전에 채택된 범주에 의해 계량화된(코딩) 자료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체험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하나의 예로 질

15)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은 넓다. 대표적으로 1920년대 미국의 시카고 학파로부터 시작된 참여관찰과 인류학의 민속기술지, 1960년대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발전한 문화연구, 일상사 연구 및 생애사 연구(이희영, 2005; 2007)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질적연구의 공통점을 생애사 연구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적 연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행위자가 생산한 자료(일기, 메모, 사진, 녹음, 자서전 등)와 구술을 중요한 연구 자료로 인정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한 서사적 인터뷰(narrative interviews)¹⁶⁾를 통해 과거체험에 다가가고자 한다. 서사적 인터뷰는 구술자의 자유로운 서사구성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자의 질문에 의해 유도된 구술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조사연구 방법의 하나이다.

(2) 질적 자료의 특성에 대한 이해: 텍스트의 담론적 특성을 분석

광의의 텍스트는 인터뷰에 의해 생성된 구술녹취록 뿐만 아니라 모든 질적 자료를 포괄한다. 문헌이나 구술의 형태를 띤 모든 텍스트는 특별한 상호작용의 생성물이다. 즉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타자를 염두에 두고 쓰이거나 이야기된 자료이다. 따라서 텍스트 생성과정에서 작용하는 담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텍스트 속에는 과거 체험의 사실성을 지시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사후적 해석이 공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나간 체험은 항상 말을 하는 현재 여기에서 기억을 매개로 회상되고 쓰이거나 말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석과 재해석의 과정에 놓이기 때문이다. 즉, 특정시기의 체험은 이전 시기의 체험을 배경으로 함과 동시에 이후의 체험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다. 이것은 곧 (사회학적 의미에서) 생애사가 구성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구자료로서의 텍스트는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재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살았던 생애사(a life as lived), 이야기된 생애사(a life as told), 체험된 생애사(a life as experienced)¹⁷⁾라고 하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의 비교와 재구성 방법이 있다.

(3) 연구자의 관점에 대한 성찰과 가설추론적 재구성

질적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는 구술자 혹은 연구대상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상대자이다. 따라서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지는 가 또한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연구자의 태도에 따라 구술자의 상호작용(구술내용)이 달라지며, 연구자의 관점에 의해 조사자료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적연구는 연구자의 주장과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 연구과정의 투명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어 중요한

16) 대표적으로 언어철학의 서사성'에 근거하여 서사적 인터뷰의 원리를 구성한 다음 작업을 참고하라 (Schuetze, 1978). 서사적 인터뷰에서 중요한 점은 구술자의 생애사적 관점에 대한 고려이다.

17)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분석적 차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Denzin, 1989: 30; Rosenthal, 1995).

연구결과가 분석되고 해석되는 근거와 과정을 밝힘으로써 독자에 의한 재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또한 가설추론(abduction)의 원리에 기초하여 텍스트를 분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연구자의 관점에 간히는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시도한다. 예를 들어 텍스트에 등장하는 하나의 사실(현재)에 근거하여 그 이전(과거)의 행위 내용을 추론하고, 이어지는(미래) 행위의 가능성에 대해 가설을 세우는 나선형의 분석 과정을 통해 연구자에 의한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텍스트 속에서 발생하는 행위의 원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추론의 연속 과정에서 연구자는 가능한 해석의 자원을 통해 텍스트의 지평을 넓히고자 시도한다. 예를 들어 동시대에 존재하는 각종 통계와 기록자료, 다양한 인문학 및 사회과학적 이론과 설명 등이 텍스트의 세계를 읽는 해석의 지평을 형성하게 된다¹⁸⁾. 구체적으로 21세기 북한여성의 인권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상식의 지평에서는 젠더에 기초한 ‘차이의 정치학’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등이 빠질 수 없는 해석의 자원이다.

2) 여성 인권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이 갖는 가능성

(1) 여성권¹⁹⁾은 일상생활(everyday life) 속에서 구성된다: 일상체험 속의 인권 연구

북한은 1946년 6월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고 제3조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사회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위한 제도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은 1986년 이래 산전 60일, 산후 90일의 휴가를 통해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다. 법제도의 측면에서 한국의 그것과 유사한 측면을 갖는다. 최근 형편이 좋지 못한 국영기업에서 여직원의 휴직과 사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고 식량위기 이후 모성근로자가 먼저 해직된다는 보고²⁰⁾는 1997년 경제위기 당시 한국에서 있었던 여성 우선 퇴직 사례에서 보여지는 가부장적 관행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최근 개인의 삶에 대한 질적연구 자료는 성문화된 여성들의 법적 권리와 일상생활에서의 양성관계는 일정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구술자들의 생애사에서 등장하는 폭력에 대한 체험과 결혼관계에 대해 주목해 보자.

18) 이와 같은 연구방법론적 모색은 북한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연구자의 이념적 편향의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북한연구 방법론에 대한 기존의 논쟁과 모색은 다음을 참고하라(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2003).

19) 이 글에서 여성권은 인권으로 대체될 수 있다.

20) 북한 여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백영옥, 2003: 243-245).

1959년 평양에서 태어나 북한작가동맹의 시인으로 활동했던 김주희 씨²¹⁾는 2006년 5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주의 가부장의 폭력과 어머니의 자살”에 관한 언급으로부터 자신의 생애사를 소개하였다. 구술자는 이와 관련된 자신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사남 이녀 중 장녀인 나에게 어머니는 늘 피해자의 모습이었다. 식사를 하다가도 밥에 돌이 있다며 밥상을 들어 부엌에 내치던 아버지, 직장에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고 어머니의 귀쌈을 때리는 일 정도는 밥 먹듯 하던 아버지. 아버지의 장기간의 구타로 병이 들어 귀가 멀고 고혈압이 오고 반신불수가 된 어머니. 그 때문에 여덟 살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던 나”(한주희, 2005: 24).

사례분석에 의하면 구술자의 어머니는 남편보다 유복한 집안 배경과 일본 유학이라는 학력을 가졌으나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구술자가 여덟살 되는 해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였다. 광폭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위의 사후적인 기술에서 구술자가 느꼈을 법한 격한 감정이 거세되어 있지만, 전체 사례분석에 의하면 어린 나이에 겪었을 폭력에 대한 공포와 아버지에게 대한 양가감정을 짐작할 수 있다(김주희, 2006 I/2)²²⁾. 이 사례에서 우리는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라 한 가족 내에서 남성가부장이 부인에게 행사한 지속적인 물리적, 정신적 폭력이 죽음을 초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41년 함북지역에서 태어난 김열란 씨의 아버지는 지역 은행을 소유한 자본가로 1947년 월남하였다. 한 달 뒤 데리러 오기로 한 부모님과 헤어진 구술자는 외할머니의 보호 속에서 성장하였다. 구술자는 사범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유치원 교양원으로 근무하다 1960년대 중반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사회연구사와 결혼하였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다, 1974년 이모가 정치적 숙청을 당한 것이 근거가 되어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혼 됐다”(김열란, 2006, I/8). 즉 북한의 이혼에 대한 성문법과 달리 출산을 여성의 책임과 의무로 돌리는 봉건시대의 관행이 사회주의 북한사회에서 ‘이혼’의 실질적인 사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정치적 행동에 대한 가족연대의 책임이 개인의 결혼권에 우선해서

21) 이 글에서 언급되는 구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정보의 내용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미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된 정보는 그에 따라 서술하였다.

22) 이것은 이 글에서 구술자료를 인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김주희 씨의 2006년 I차 인터뷰 녹취록 중 2쪽에서 인용하였다는 뜻이다.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 여성들의 인권은 북한사회주의 체제와 가부장제라고 하는 정치, 문화적 제도가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에서 확장되거나 굴절되고 있다. 오랜 가부장제의 역사 속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 가부장의 일상적인 폭력은 많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의례 그래왔던 습관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국에서 폭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족관계 내에서의 폭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²³⁾. 오랫동안 가부장의 폭력은 한국사회에서도 ‘사적인 일’로 치부되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의 여성들이 어느 정도 남성들의 폭력을 체험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문화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는지는 여전히 연구의 과제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인권의 제약과 침해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일상 속에서 ‘문화화된 형식’으로 구조화되기 때문이다. 북한 여성권에 대한 질적 연구는 이와 같은 일상의 체험에 주목하며, 이것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2) 신체와 정신의 폭력에 대한 체험은 언어화되지 못한다: 텍스트의 행간을 해석

기존의 각종 연구보고서는 중요한 북한여성의 인권 침해 사례로 인신매매와 성폭력, 강제 결혼 및 성매매를 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최근의 보고서를 살펴보면(통일연구원, 2008: 279-286), 인권침해의 구조는 시기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량위기가 시작된 초기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여성들이 단독으로 중국으로 가는 국경을 넘었다. 중국에 의지할 친인척이 없는 경우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 조선족의 호의에 의지하다가 약간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중국인에게 인계되었다. 이 과정에서 초기적인 돈거래가 성립되어 매매혼의 형태를 띠기도 하였다. 이 경우 의지할 곳이 없는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후 불법 국경이동이 급증하면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전문안내인(일명 부로커)들이 장마당이나 역전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으로 시집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유인하여 중국 각 지역으로 팔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에서 거래된 북한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는 사례나 북한 내에서의 성매매 사실도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보고서의 내용

23) 1998년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은 대부분 한국으로 온 북한 여성들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경우를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체험을 전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 여성들이 북한 안과 밖에서 매매혼, 인신매매 혹은 성폭력으로 이르게 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인권침해의 구체적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혀있다. 앞에서 살펴본 김주희 씨의 사례연구를 보자.

1998년 5월 정치적인 이유로 평양에서 추방된 구술자는 남편과 이혼하고 청진 근처의 국경지역을 헤매다 사촌동생이 소개한 부로커의 안내를 받으며 1998년 7월 11일 북한 국경을 넘었다. 중국으로 온 구술자는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매매혼을 승낙하고 한족과 결혼하였다. 그러다 9월 다시 강을 건너 북한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왔다. 살길을 찾아 조선족 남자와 살다가 헤어지고 다시 연길지방에서 온 남자와 동거하였다. 그러나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무자비한 구타와 성폭력으로 구술자와 아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99년 1월 어느 날 구술자는 피와 땀투성이 내복바람으로 아들을 안고 인근 교회의 정문으로 뛰어들어 도망하였다. 단행본 자서전에서 구술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 시기의 체험을 10여 쪽에 걸쳐(272~286)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²⁴⁾. 이 글은 어떤 다른 자료에서도 알기 어려운, 신체의 권리를 박탈당했던 북한 여성의 구체적인 체험을 담고 있다. 이것은 전업 작가였던 구술자의 비상한 작가의식의 결과로, 보기 드문 자료이다. 텍스트 분석에 의하면 구술자는 중국으로 오면서 시민권을 상실한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중국 국민으로서의 합법적 권리를 갖지 못한 구술자는 생존을 위해 몇 번의 매매혼을 거치면서 결국 한 중국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물이자, 폭력의 노예가 되고 있다. 즉 구술자의 체험은 한 여성이 북한 최고 엘리트에서 폭력과 성행위의 노예가 되는 급격한 신분하락과 인권침해의 과정을 보여준다.

필자가 만난 대부분의 여성구술자들은 북한의 국경을 넘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슷한 경로를 통해 중국 각지로 매매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구술자는 이를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기억”으로 표현한다. 또 다른 구술자는 중국에 머물던 3-4년 동안의

24) 작가인 구술자는 생존을 보존하기 어려운 탈북과 한국행의 과정에서도 자신의 체험을 기록하고 이를 간직하였다. 이후 구술자는 이 시기의 기록을 토대로 단행본 수기를 발간하였다. 필자는 이 작업이 구술자가 겪은 인신의 구속과 폭력에 대한 고발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동시에 구술자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한 노력의 표현이기도 하다.

시기를 ‘그럭 저럭 지내던 때’라는 한 줄로 압축함으로써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기도 한다.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국경을 넘고, 인신의 자유를 상실하고 구타와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북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비(非)인간이다. 예를 들어 국경을 넘어온 남성들의 경우 동일한 불법 이주자의 신분이지만 성적 노예의 신분이 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성적 위계에 의한 구획이 분명히 드러난다. 북한 여성의 인권 침해는 성차별을 통해 더욱 가혹해지는 특성을 띠고 있다.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삶에 관한 질적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와 같은 체험은 대부분 언어화되지 못한다(Loch, 2002). 정신적 상처와 결합된 성폭력의 경우 다양한 방어기제를 통해 망각되거나 분절화된 기억으로 존재하는 특성을 갖기도 한다(Terr, 1997). 이처럼 육화(肉化)되거나 혹은 분절된 기억으로 존재하는 인권의 현실에 다가가기 위해 질적연구의 해석학적 방법론이 하나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언어화된 사실만이 아니라 행간을 읽고 해석하는 가설추론적 텍스트 재구성 방법(이희영, 2005: 136-143)은 과편화된 체험으로 존재하는 ‘인권 부재의 현실’을 재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 방법이다.

(3) 여성권은 전 생애를 통해 장기지속적으로 구성된다: 생애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북한 이주민의 적응상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북한에서 구성된 가족관계 및 탈북과정에서의 체험과 연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조영아, 전우택, 2005: 19). 특히 위에서 언급한 매매혼과 성폭력을 체험한 북한 여성들의 경우 남한에서 생활하는 동안 내면적 갈등에 직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신체권과 사회권을 온전히 부정당했던 경험을 스스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남한사회의 공적영역에서 지배적으로 관철되는 ‘혼전순결’ 혹은 ‘현모양처’ 등의 담론을 직,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탈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을 반추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분석에 의하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젊은 여성들끼리 부분적이거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기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서로 묵인하며, 언급하지 않는 금기(tabu)로 존재한다.

개인의 생애사적 체험에 대한 구술은 연구자에게 북한 여성의 인권문제에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동시에 구술자는 묻어둔 자신의 체험을 발언함으로써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폭력에 대한 기존의 질적 연구들은 폭력의 체험에

대한 사회적 금기와 침묵은 제2의 트라우마를 생산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²⁵⁾. 이런 관점에서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연구는 ‘성폭력’ 혹은 ‘인신매매’ 사건들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관점에서 성폭력과 인신매매의 중장기적인 ‘체험’에 대한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로 인한 여성들의 상처를 고려하는 대책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4) 여성 인권에 대한 연구는 비참(cruel)에 관한 연구가 아니다: 행위성에 주목하는 연구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잔혹한 폭력과 인신매매의 사건들을 발견하고 전달하는데 주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선정적인 사례보고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마치 얼마나 더 비참한 인권유린의 경우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수집하여 보고하는 르포르처럼 읽혀지기도 한다. 즉 사건 자체에만 주목하는 연구의 관점은 행위자를 배제함으로써 인간이 없는 인권문제를 언급하게 된다. 따라서 인권 침해의 발생의 동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대상자인 여성들을 ‘피해자화’하는 관점을 벗어나기 어렵다.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가부장적 정치권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직,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스스로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중심에 서고 있는 적극적 행위자이기도 하다.

필자는 북한 여성들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식량위기의 피해자’로 환원될 수 없는 놀라운 개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생존권이 위협받는 사회현실에 직면하여 수없이 사선(死線)을 넘고 폭력을 체험하며 한국사회에 오게 된 ‘삶의 의지’를 가진 여성들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체험을 겪으면서도 자존감을 지키려는 여성들이다. 북한 여성권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행위에 주목하는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비참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엄함(dignity)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체험에 주목하는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5) 북한 여성권은 초국가적 특성을 띠고 있다: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국가주의 극복.

북한여성들의 탈북과정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 년에 걸쳐있다. 공간적으로는 북한

25)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갔던 한국여성에 대한 연구와 독일 나찌 강제수용소에서 성폭력을 체험한 여성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으로부터 중국 및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정치적 집단에 의해 인간적 권리의 박탈을 체험한다. 또한 최근의 연구는 북한여성에 대한 인신 매매와 기획 탈북 등의 현상이 북한, 중국 및 제3국까지 연관된 조직적 연결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지를 데려오고 싶은 북한이주민들이 이와 같은 탈북 안내조직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 과정에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북한 이주민들의 정착금이 중요한 물질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북한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연구는 탈북 여성들의 구술을 통해 북한 내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생활실태를 추론하는 연구, 북한을 떠나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여성들의 생활현황에 대한 연구, 그리고 북한이주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에 대한 연구 등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 구획된 대상, 지역, 특정 생애시기로 나누어져 수행되고 있다. 한 개인 행위자의 생애사적 연속성 속에 존재하는 사실 혹은 체험을 부분으로 채록하여 조사함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로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체험이 관여하는 국가와 사회의 물질적, 정치적, 담론적 틀을 조망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북한 사회에서 정치사회화를 경험하고 개혁 개방된 중국사회를 거쳐 한국사회에 정착한 개인의 삶 속에서 남한 정부가 지급한 정착금의 일부를 탈북 안내조직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는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한국 내 북한이주민이 비밀리에 북한으로 보내는 돈이 불법 탈북 안내조직을 살찌운다(반(反)인권적)는 비판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송금되는 나머지 액수가 북한주민의 생존을 지탱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이해한다.

이처럼 국가 사이의 경계를 횡단하며 조직되는 복합적인 행위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현실 속에서 ‘인권’이 어떤 모습으로 구조화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자신의 인간적,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는 개인의 생애사적 체험에 주목하는 질적연구는 이와 같은 초국가적 경험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접근 방식이다.

4. 마무리

지금까지 북한 여성의 인권에 관한 연구에서 질적연구방법론이 갖는 함의를 살펴보았

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한다고 해서 연구의 ‘질’이 보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질적연구방법론은 만병통치약이거나, 혹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허풍선이 도구(tool)일 것이다. 오히려 질적 연구는 좀 더 많은 연구자의 수고를 필요로 한다.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과학 연구의 성과뿐만 아니라, 객관성 너머에서 일상적 체험으로 구성되는 인간의 권리와 노력을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적연구방법론의 문제의식은 새로운 인간이해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각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질’을 확보할 수 있는가는 방법론적 도구(tool)가 ‘도구적 원리’를 넘어설 때 일 것이다.

참고문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2003. 『북한연구 방법론』. 한울아카데미.
- 김근식. 2002. 「북한의 인권: 안으로부터의 시작」, 한국인권재단 편 『한반도 평화와 인권 2』, 사람생각.
- 김인성. 2005. 「탈북자 현황분석」, 『민족연구』, 14호, pp. 6-34.
- 노옥재. 2003. 「북한인권의 성격과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pp. 9-16.
- 백영옥. 2002. 「중국 내 탈북 여성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6/1, pp. 241-264.
- 서보혁. 2007.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 한울아카데미.
- 이미경. 2006.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지위변화 전망」, 『가족과 문화』, 제18집 1호, pp. 33-55.
- 이영심. 2006. 「두만강을 두 번 넘나들기까지 좁쌀 알처럼 흩어진 탈북자들, 과연 그 는...」, 북한연구소 간, 『북한』, 제418호, pp. 174-181.
-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39/3.
- 임순희. 2005.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삶」,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관련 연구보고서』, pp. 419-438.
- 조영아·전우택. 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0호 1권, pp. 17-35.
- 조효제. 2007.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 (사)좋은벗들. 1999.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정도출판사.

_____. 2007년. 『2006~2007 북한 사회변화와 인권』.

통일연구원. 2008.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Denzin, Norman K. 1989. *Interpretive Biography*. London: Sage Publications.

Loch, Ulike. 2002, "Grenzen und Chancen der narrativen Gesprächführung bei Menschen mit traumatischen Erlebnissen in der Kindheit", in Schaeffer et al (ed.), *Qualitative Gesundheits- und Pflegeforschung*. Bern, Göttingen, Toronto & Seattle: Verlag Hans Huber. pp. 233-246.

Medica Mondiale e.V.; Marlies W. Froese; Ina Volpp-Teuscher(eds.). 1999. *Krieg, Geschlecht und Traumatisierung: Erfahrungen und Reflexionen in der Arbeit mit traumatisierten Frauen in Kriegs- und Krisengebieten*. IKO-Verlag fuer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Rosenthal, Gabriele. 1995. *Erlebte und erzählte Lebensgeschichte*. Frankfurt/ New York: Campus.

Schütze, Fritz. 1984. "Kognitive Figuren des autobiographischen Stegreiferzählens." pp. 79~117 in Kohli, Martin; Robert, Günther(eds.). *Biographie und soziale Wirklichkeit. Neue Beiträge und Forschungsperspektiven*. Stuttgart: J.B. Metzlersche Verlagsbuchhandlung.

Terr, Lenore. 1997. *Schreckliches Vergessen, heilsames Erinnern. Traumatische Erfahrungen drängen ans Licht*. Mnchen: Kindler.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접근방법 모색

| 인 쇄 | 2008년 9월

| 발 행 | 2008년 9월

| 발행인 | 안 경 환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팀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758 | F A X | (02) 2125-9733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사전 승인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093-01